

워크숍 자료집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 - 5

환경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 및 논의점

2007. 5. 23.

워크숍 일정

- ◆ 주 제 : 환경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 및 논의점
- ◆ 일 정 : 2007년 5월 23일(수요일) 15:00 ~ 18:00
-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 구 성

◇ 사 회

오준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주제 발표

제 1 주제 :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발 표 자 :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 2 주제 : 환경행정법의 특성과 행정처분기준

발 표 자 : 고문현 (울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coffee break -

◇ 종합토론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함태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법제 현황 및 정비방향 (강문수)	9
I. 서 론	9
II. 환경행정분야 관련법제 현황	10
1) 환경행정분야 관련 법령 구분	12
2) 환경행정분야 관련법령상 (제재적)행정처분규정 현황	17
3)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현황	95
III.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195
1.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195
2.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196
3.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196
IV.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향	197
◆ 환경행정법의 특색과 환경행정처분 기준의 문제점 (고문현)	201
I. 서 론	201
II. 환경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202
1. 의 의	202
2. 특 색	206

Ⅲ. 환경행정법체계의 문제점	210
1. 비체계성	211
2. 비효율성	213
Ⅳ. 환경행정법의 처분기준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5
1. 서 설	215
2. 환경보전관련법령의 처분기준과 관련한 문제점	216
3. 폐기물관리법령	227
Ⅴ. 맺으며	233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발 표 :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법제 현황 및 정비방향

강 문 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소위 행정처분기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 (Ermessensrichtlinie), 해석지침(Auslegungsrichtlinie)¹⁾ 및 간소화규칙 등과 같은 행정규칙으로 제정되어 지며²⁾, 이는 일반적으로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각종 인,허가나 제재적 행정처분 (취소, 철회, 정지 등)에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위통제규칙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행정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생명체와도 같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관련법령의 내용도 그에 맞추어 변화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하는 행정처분기준은 변화하는 제반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처분양정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의 공익목적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율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행정처분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경우, 불명확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배한 경우, 상위법과 모순이 있는 경우,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행정실무에서도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고 행정의 객체인 국민 역시 이로 인해 권익을 침해 받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온 바,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현행 법령상 행정처분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새로이 체계화하여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 및 향상,

1) 김 향기, 행정규칙의 유형과 외부효과, 월간고시(1994.3), 70면- 해석지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법령해석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이다. 이는 행정행위의 요건을 불확정개념으로 정하는 법령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 하급기관이 불확정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해석이나 적용방향을 정해 줌으로써 법령해석의 통일과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행정내부에 있어서 규범해석을 통일하여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법적 평등취급을 보장하고 법률의 집행을 정형화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홍 준형, 행정법총론, 제4판, 530면.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2006년에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 (I)”로서 우선적으로, 경찰- 보건- 건축행정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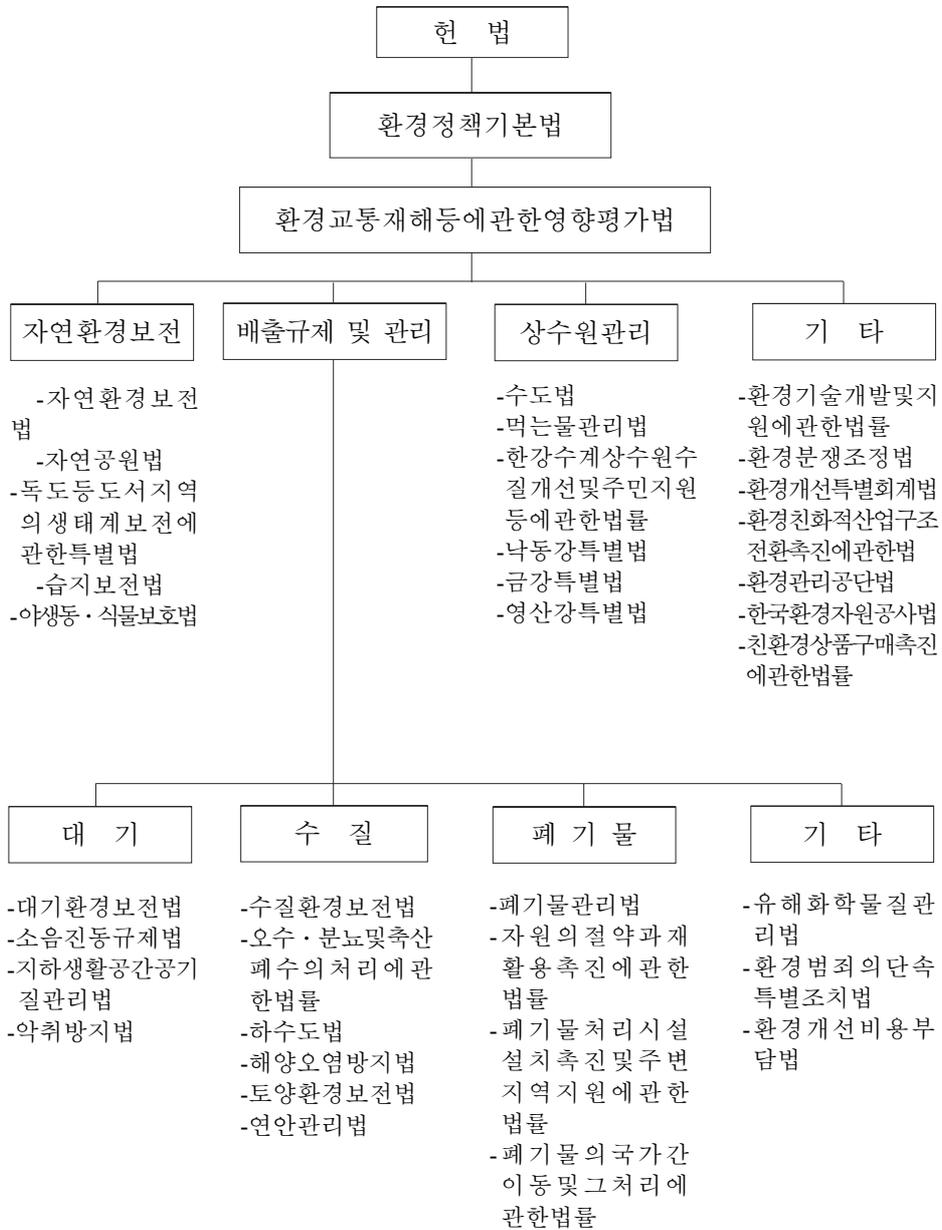
본문은 2006년도에 수행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의 계속 수행의 일환으로서 환경행정분야에 있어 행정처분기준의 특징 및 운용현황을 파악하여 전년도에 수립된 행정처분기준의 일반원칙,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과의 상응성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에 정합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환경행정분야 관련법제 현황

일반적으로 환경관련 법률의 입법방식은 모든 환경문제를 단일법에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단일법주의, 오염종류별 또는 규제대상별로 복수의 법을 제정하는 복수법주의, 그리고 이 양자를 절충한 것으로 단일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별법을 따로 마련하는 절충주의로 나눌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복수법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법에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각종 오염현상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었던 환경보전법의 체계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반성을 토대로 환경보전법을 오염분야별로 분화시키되 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이념, 그리고 환경권을 구체화할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을 모두로 하여 각종 분야별 환경관련 법률들로 구성되어 지고 있다.³⁾

3) 홍준형, 환경법 제2판 (박영사, 2005), 53면.

【환경법의 체계】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행정분야 관련법령의 현황을 현행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의 구성체계에 따라 크게 ① 행정조직- 통칙, ② 환경보전, ③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의 순으로 그 현황을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논제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을 전수조사를 통하여 그 유형과 실무상의 운용현황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1) 환경행정분야 관련 법령 구분

1. 행정조직·통칙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정 2006.7.4 행정자치부령 제215호]
- 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9.3 환경부령 112호]
-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9.12.9 환경부령 88호]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7.2.28 대통령령 제19915호]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13 환경부령 제229호]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92호]

2. 환경보전

- 공해방지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수수료규정 [전문개정 1969.11.17 대통령령 제4264호]
-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환경부령 179호]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4 대통령령 제19745호]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환경부령 179호]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4 대통령령 제19745호]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55호]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3.13 환경부령 제201호]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3.23 대통령령 제19954호]

-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14 환경부령 제230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21 대통령령 제19770호]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2004.2.9 법률 7167호]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6.30 환경부령 제158호]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6.25 대통령령 18443호]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5.5.18 법률 7497호]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8호]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30 환경부령 제212호]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71호]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6.29 환경부령 제210호]
-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9호]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29 환경부령 제224호]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63호]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9.7 환경부령 제219호]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18 환경부령 제221호]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1.28 대통령령 제19741호]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1호]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9.30 환경부령 제184호]
-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정 2005.2.7 대통령령 18695호]
-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9.27 환경부령 제183호]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4.4 대통령령 제19991호]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 8371호]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환경부령 179호]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4 대통령령 제19745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3호]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5호]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30 환경부령 제206호]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4.4 대통령령 제19991호]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 2007.4.27 법률 제8405호]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70호]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2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7.22 대통령령 제18953호]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환경부령 179호]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7호]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7.4.4 기타 제364호]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7.4.4 대통령령 제 19991호]
- 해양오염방지법 [폐지 2007.1.19 법률 제8260호]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8 해양수산부령 제349호]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2.12 대통령령 제19883호]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215호]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9.11 환경부령 제129호]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2.1 대통령령 제19865호]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5호]
- 환경관리공단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30 환경부령 제213호]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
-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8호]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24 환경부령 제218호]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7.27 대통령령 제19628호]
-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7.1.5 환경부령 제225호]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61호]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2.12 대통령령 제19883호]

3. 폐기물 관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6.9.27 법률 제8010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9 환경부령 제226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5 대통령령 제19883호]

19828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5 대통령령 제19530호]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10.11 건설교통부령 제 534호]
- 오물소제령시행규칙 [일부개정 1960.11.18 국무원령 제108호]
- 오물의수집운반및처리위임규정 [제정 1960.12.29 보건사회부령 59호]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폐지 2006.9.27 법률 제8014호]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 215호]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6.12.4 대통령령 제 19745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7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28 환경부령 제231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 19971호]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3.14 환경부령 제202호]
-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2.14 환경부령 제228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5 대통령령 제19827호]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1.19 법률 제8260호]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 18312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2.22 대통령령 제19352호]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6.11 대통령령 18428호]

2) 환경행정분야 관련법령상 (제재적)행정처분규정 현황

1. 환경보전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제13조 (총량초과부과금)

-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에 한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부과금"으로 본다.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⑦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 ⑧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 (과징금처분)

-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사업장의 규모 및 위반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④제13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과징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과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15조 (허가의 제한)

-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의 수질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6.9.27>
- ②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하는 때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3조 (과태료)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제13조 (총량초과부과금)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 또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에 한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5.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부과금"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4조 (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사업장의 규모 및 위반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제13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과징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과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15조 (건축허가의 제한)

- ①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수질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제한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하는 때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 (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관한 자
 4.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5.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9.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 제12조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이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명령시 정한 기한내에 남극지역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남극활동 정지명령에 관하여 그 사유와 위반정도 등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외교통상부장관은 남극활동의 허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7조 (과태료)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한 자
 4.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8.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55호]

- 제16조 (과태료)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5.31>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3.23 대통령령 제19954호]

- 제4조 (과태료의 부과)

-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1.19 법률 제8260호]

제19조 (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사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고,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7.8.28, 2005.12.29>

1.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1997.8.28>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4의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여부

5. 기타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1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신설 1999.4.1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신설 1992.12.8, 1995.1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12.8, 1995.12.29, 1999.4.15, 2005.12.2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1994.1.5, 1995.12.29, 1999.4.15, 2005.12.29>

⑧환경부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5.12.29>

⑨환경부장관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1999.4.15>

제20조 (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하는 경우
13.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전문개정 2005.12.29]

제21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삭제 <1999.4.15>

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 (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고,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자가측정)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

하는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⑦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⑧환경부장관은 제8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⑨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할 경우
1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제37조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제87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55조 (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66조 (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64조제3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사업자가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60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검사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제67조 (과징금 처분)

①시·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제66조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업무를 정지처분하면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정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비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73조 (등록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가 제7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등록된 범위 외의 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8.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94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6. 제41조제3항 분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8. 제44조제2항이나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5항(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합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합시정 현황과 부품결합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7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7. 제70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2004.2.9 법률 7167호]

- 제10조 (출입금지등)
- ①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보호·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그 지역에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도서주민이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군사·항해·조난구호 목적상 또는 천재지변등 재해의 발생으로 그 방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5.24>
 -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환경부장관은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상회복명령등)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안에서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위를 정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도서를 출입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6.25 대통령령 18443호]

제8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가능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8호]

제11조 (샘물 개발허가의 제한 등)

①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9조의 샘물 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플개발을 허가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실적이 없는 경우
8.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1. 먹는샘물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용기)에 넣은 것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4.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 다만, 수입한 먹는샘물은 제외한다.

제2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한정자산자나 금치산자일 때
2. 영업을 하려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때
3.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일 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5.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이나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 할 때
6.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9조 (광고의 제한)

- ①환경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②시·도지사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 ①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지도와 개선명령)

-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 또는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 (폐쇄조치 등)

- ①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봉인)
-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경우
 -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⑤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 (폐기처분 등)

제1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①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2.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 (허가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9조제4호를 위반하여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을 판매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6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2조를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9. 제39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이나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12. 제45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청문)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2. 제3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취소
3.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제51조 (과징금 처분)

- ①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1조 (과태료)

- ①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9호]

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6. 제1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7.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34조 (인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자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 ②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제작 자동차의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 (등록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나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개임)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①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소음도 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 능력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시험장비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⑤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제49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 공사를 시행한 자

4.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90호]

제15조 (허가의 제한)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일:2007.7.1]

제20조 (총량초과부과금)

- ①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때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 ③부과금의 산정기준·산정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부과금"으로 본다.
- ⑥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⑦환경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시장등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징수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 ⑧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시장등은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시행일:2007.7.1]

제21조 (허가의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27> [시행일:2007.7.1]

제4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6>

1.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출입·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시장등(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으로 본다.

제1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전복, 추락 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 ②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
 6. 「원자력법」 제2조제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③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낙시행위의 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낙시금지 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시제한구역 안에서 낙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낙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낙시제한구역 안에서 낙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일:2008.4.12] 제20조제1항

제30조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 (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12조제3항

<p>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2. 초과배출부과금</p> <p>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p> <p>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한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p>③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 한한다.</p> <p>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⑦환경부장관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 안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p> <p>⑧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제42조 (허가의 취소)</p> <p>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위반한 때 3.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4.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철거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p>제43조 (과징금 처분)</p> <p>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p>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4. 제조업의 배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②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④제41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64조 (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6조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4. 제6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2.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3.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1호]

제14조 (증지명령등)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안에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증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15조 (출입제한)

①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2005.3.31, 2007.1.26>

1. 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군사상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2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3.31>

■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9.30>

③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훼손된 습지생태계의 복원가능성 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제11조 (사용중지명령)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중 신고를 한 자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악취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과징금 처분)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대신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6.9.27, 2007.4.11>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
2.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악취배출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3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시·도지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당해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장소에 당해 악취배출시설을 설

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악취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을 한 경우
 5. 보유한 기술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과 중복된 경우
-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자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기관

제3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정 2005.2.7 대통령령 18695호]

제10조 (과태료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제9조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 ①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덧·창애·울무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덧·창애·울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 ①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 ②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덧·창애·울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등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방사 또는 이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야생동·식물이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당해 야생동·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1>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기준 및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가 변경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한 때 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누구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허가의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동·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2.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것

③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그 밖의 적정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광고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을 촉진시키거나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①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덫·창에·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은 경우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동물을 포획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9조 (출입제한)

①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특별보호구역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안에서 제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6조 (등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9조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제4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4.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6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1항·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제22조·제36조제1항·제40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자
4.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7.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8.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간 자
9.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11.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 제4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
16.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체납처분 또는 지방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 8371호]

제13조 (총량초과부과금)

-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 또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에 한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5.3.3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 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부과금"으로 본다.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⑦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 ⑧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 (과징금처분)

-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사업장의 규모 및 위반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④제13조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과징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과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15조 (허가의 제한)

-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의 수질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6.9.27>

②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하는 때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설 설치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제4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

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16조 (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

①환경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후에 다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2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5.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5.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3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7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 또는 제36조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이 있을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6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26조제1항(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자
 5. 제28조제2항(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7.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9.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0.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5호]

- 제15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①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이식)·훼손하거나 고사(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땃·울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

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산림유전자원보호령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령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
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항 각호의 행위
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17조 (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6조 (과태료)

-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제13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 ① 누구든지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스톡홀름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내용·관리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③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 5(V)에 따라 매년 수출통보서에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내용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고도 그 기간 안에 개선하지 아니하는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 (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배출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된 과징금 중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 (재활용의 제한)

①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p>제37조 (과태료)</p> <p>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배출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거나 처리한 자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에 대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③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시료채취·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p>제20조 (과태료)</p> <p>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본조신설 2006.9.27]</p>
--

<p>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p>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6.9.27]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 2007.4.27 법률 제8405호]

제34조 (등록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폐자동차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营业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폐자동차재활용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 (과태료)

①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물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제1항이나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자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수탁한 재활용사업자의 상호·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한 자
--

<p>제4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①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④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2호]

<p>제20조 (토지이용등의 제한)</p> <p>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p>
--

<p>제21조 (행위제한)</p> <p>①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p>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1997.12.13, 2005.3.31, 2006.9.27>

②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 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2007.9.28] 제 21조제1항

제23조의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때
2.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23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5.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7.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8. 제2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때
9.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전문개정 2004.12.31]

제23조의10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때
3. 제23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23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때
6.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본조신설 2004.12.31]

제23조의13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이 있을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4.12.31]

제26조의4 (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1]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2006.9.27>

1.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2.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8.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2제4항 및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②삭제 <2001.3.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2007.9.28] 제32조제1항제7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제5조 (수변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수변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안에서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전량 퇴비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오수처리기준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5.3.31, 2005.12.29, 2006.9.27, 2007.4.11>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3.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4.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변구역안에서는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변경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2007.9.28]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 (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①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1>
 ②삭제<2001.1.16>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7호]

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호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 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을 수입·반입하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
- ④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①누구든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가공·유통·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양식어류 또는 수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 ②「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어업활동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혼획(혼획)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등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5.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인 경우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특정 해양생물이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허가의 취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함에 있어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련 광고제한)

누구든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해양보호구역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증축행위(해양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유수면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5. 공유수면에서의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6.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8. 그 밖에 해양생태계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행위로서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영어(영어)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해양생태계조사 및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7.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관보호구역에 생태체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는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는 동 구역지정의 근거사유가 되는 해양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생물의 포획·채취행위를 할 수 있다.
-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등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 (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2조 (해양생물의 수출·수입 등의 제한)
 ①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1조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등을 제한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파생물·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반입의 방법, 수량, 지역 및 사업자 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동물 등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함에 있어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65조 (과태료)

- ① 제36조제5항(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제거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자
 3.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7.4.4 대통령령 제 19991호]

제3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처분내용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80호]

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하고자 하는 장소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

가.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밸러스트수, 화물창의 세정수(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다.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밸러스트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세정도(세정도)에 적합하게 배출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전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밸러스트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에서 세정된 밸러스트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화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②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시설 및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2.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제23조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 중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위탁자가 위탁처리를 신고한 폐기물에 한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밸러스트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의 화물창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밸러스트수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이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의 선수(선수)탱크 및 충돌격벽(충돌격벽)보다 앞쪽에 설치된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등록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7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에 위반한 경우

7.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7조제1호 내지 제4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가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실적이 없는 때
5.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7.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작성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4.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건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건본을 제공한 자
5.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관리한 자 및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10.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2.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작동한 자
2.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3.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4. 제4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자
5.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4.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14. 제7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15.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7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자
18.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13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①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73호]

제12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등)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1.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9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평가서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등록후 2년이내에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향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과태료)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계약의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1의2. 평가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 및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의 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3.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착공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협의기관장이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2.12 대통령령 제 19883호]

제36조 (과태료의 부과)

- ①협의를기관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협의를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협의를기관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관리공단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제25조 (과태료)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지시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7.11.28>

제26조 (과태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6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89.12.30, 1997.12.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7.12.1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89.12.30, 1997.12.13>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1987.11.28]

■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①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3, 1994.12.23, 2004.3.17>

-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4.12.23>
- ④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1.27> [본조신설 1988.9.20]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제7조의4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3]

제10조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평가 및 지정취소 <개정 2007.1.3>)

-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07.1.3>
- ④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1.3>
 1.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제19조의3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03.5.29]

제19조의6 (환경건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건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임원이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4.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본조신설 2005.12.30]

제22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의2.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 및 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재료 및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26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경우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제품을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인증기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경우
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및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재료 및 제품을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인증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2006.10.4>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2006.10.4>
2. 삭제 <2006.10.4>
3. 삭제 <2006.10.4>
4.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31>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6.23>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19호]

제66조 (과태료)
 ①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문서·물건을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5.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5.1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5.11>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7.27 대통령령 제19628호]

제36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폐기물 처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6.9.27 법률 제8010호]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설치자가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
4. 시설설치자가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7.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8.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9.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0.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1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1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3.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16.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과징금)

-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제32조제4호 내지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당해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营业을 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8.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5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과태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3.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한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5.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자
 7.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8.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9.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0.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
 11.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3.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15.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제25조 (허가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지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과징금의 처분 등)

①시·도지사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을 정지가 당해 영업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영업을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폐쇄된 경우
5.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6.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중(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7.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8.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6.12.28]

제61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8>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한 자
5.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자
- 6의2.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7.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9.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7.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제30조 (과태료)
- ①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5 대통령령 제19530호]

-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6.6.1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2006.9.27>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 6의2.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 6의4. 제2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수탁한 재활용사업자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 2의3.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71호]

제5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①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매립 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营业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못 미치게 된 경우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8조 (과징금 처분)

- ①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그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각각 징수한다.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방치폐기물이 있으면 그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을 제33조에 따라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파산법」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변명이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3. 제25조제8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같은 항 제3호의 자

7. 제4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또는 추가 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4.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서나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0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1.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산 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 인계서나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이내에 전산 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 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1.19 법률 제8260호]

제15조 (폐기물의 수출입허가취소)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삭제 <2001.1.16>

제19조 (수출입금지<개정 1997.8.28>)

①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이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01.1.16>

③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 <신설 2001.1.1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및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제20조 (반입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1999.2.8, 2001.1.16>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한 때
2.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한 때
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의 수입동의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
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의 반출 또는 반입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1.1.16>

1.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동 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동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에 위반하여 포장·표지부착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 제25조 (과태료의 부과등)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7.16, 2004.3.17>
 -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안에서의 행위제한등)
-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분할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야적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제30조 (과태료)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6.11 대통령령 18428호]

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 납부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2004.3.17>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현황

1. 환경보전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환경부령 179호]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24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법 제12조 제5항 또는 제7항	조업	조업	조업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은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제7항	10일	30일	60일	
(2) (1)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기간중에 조업한 경우		조업	폐쇄		

※ 비고 : (2)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중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4 대통령령 제19745호]

[별표 2] <개정 2005.9.30>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의 규정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이에 다목의 연도별 부과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할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양중 큰 양으로 한다.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배출농도×10⁻⁶-할당오염부하량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지정배출량)×배출농도×10⁻⁶

비 고

1. 오염물질의 양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일일유량 = 측정유량×조업시간

비 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①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 ②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 ③① 또는 ②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부과금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 도	오염물질 1kg당 연도별 부과금단가
2004	3000원
2005	3300원
2006	3600원
2007	4000원
2008	4400원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2009	4800원
02010	5300원

비고 : 2011년 이후의 연도별 부과금단가는 전년도 부과금단가에 1.1을 곱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10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이상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200% 이상	300% 이상	400% 이상
		40% 미만	60% 미만	80% 미만	100% 미만	200% 미만	300% 미만	400% 미만	
부과계수	3.0	3.5	4.0	4.5	5.0	5.5	6.0	6.5	7.0

비고 : 초과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text{지역별 부과계수} = \frac{\text{목표수질지점의 평균수질}}{\text{목표수질}}$$

비고

1. 목표수질지점의 평균수질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된 수질의 평균수질을 말한다.
 2.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구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폐수 배출량 규모(m ³)	위반횟수별부과계수
10,00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8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7,000 이상 10,0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7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4,000 이상 7,0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6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2,000 이상 4,0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5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700 이상 2,0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4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한다.
200 이상 7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3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것으로 한다.
50 이상 2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2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으로 한다.
5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1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5.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량초과부과금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초과배출이익×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별 부과계수×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비고 :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을 말한다.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5.7.22 환경부령 179호]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26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5항	조업	조업	조업 폐쇄
(2) (1)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기간중에 조업을 한 경우	법 제12조 제5항	조업	폐쇄	
(3)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결과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 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 제5항	조업	조업	조업 폐쇄
(4) (3)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기간중에 조업을 한 경우	법 제18조 제5항	조업	폐쇄	

한 경우									
------	--	--	--	--	--	--	--	--	--

※ 비고 : (2) 및 (4)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중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4 대통령령 제19745호]

[별표 2] <개정 2005.4.30>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의 규정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이에 다목의 연도별 부과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 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할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양중 큰 양으로 한다.

$$- \text{일일초과오염배출량}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농도} \times 10^{-6} - \text{할당오염부하량}$$

$$- \text{일일초과오염배출량} = (\text{일일유량} - \text{지정배출량}) \times \text{배출농도} \times 10^{-6}$$

비 고

1. 오염물질의 양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text{○일일유량} = \text{측정유량} \times \text{조업시간}$$

비 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①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 ②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 ③ ① 또는 ②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 다. 연도별 부과금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 도	오염물질 1kg당 연도별 부과금단가
2004	3000원
2005	3300원
2006	3600원
2007	4000원
2008	4400원
2009	4800원
2010	5300원

비 고 : 2011년 이후의 연도별 부과금단가는 전년도 부과금단가에 1.1을 곱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10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이하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	3.0	3.5	4.0	4.5	5.0	5.5	6.0	6.5	7.0

비 고 : 초과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text{지역별 부과계수} = \frac{\text{목표수질지점의 평균수질}}{\text{목표수질}}$$

비 고

1. 목표수질지점의 평균수질은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된 수질의 평균수질을 말한다.

제1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2.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구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폐수 배출량 규모 (m ³)	위반횟수별부과계수
10,0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8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7,000 이상 10,0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7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4,000 이상 7,0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6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2,000 이상 4,0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5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700 이상 2,0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4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한다.
200 이상 7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3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것으로 한다.
50 이상 2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2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으로 한다.
5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의 경우 : 1.1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5.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량초과부과금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초과배출이익×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별 부과계수×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비 고 :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14 환경부령 제230호]

[별표 27의7] <개정 2004.12.31>

과징금 산정기준(제92조의14관련)

1. 산정방법

법 제 37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1월당 과징금액에 별표 33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1월당 과징금액

1월당 과징금액(만원)

1일 평균검사대수 30대 이하	1일 평균검사대수 31대 이상 50대 이하	1일 평균검사대수 51대 이상
1,000	1,500	2,000

비 고

1일 평균검사대수(재검사대수를 제외한다)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월간 평균검사대수를, 사업개시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가 있는 전날까지의 평균검사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다.

[별표 33] <개정 2006.12.29>

행정처분기준(제122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마"의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 가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가목 중 (4), (8)에서 매연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3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나)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 제21조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2) 법 제10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3)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법 제20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3의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3항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3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	법 제14조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0조				
(가)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을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p>설치하는 행위</p> <p>(다)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지하는 행위</p> <p>(라)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지하는 행위</p> <p>(마) 기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p>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5)에 해당하여 사람 또는 가축에 피해발생 등 중대한 대기오염을 일으킨 경우	법 제20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7)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8)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7조 법 제20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9)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	법 제20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경 고	허가취소 또는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폐 쇄		
(10)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자가측정을 허위로 기록하였거나 기록부 및 자가측정시의 여과지 등을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0일
(1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법 제24조	선임명령 변경명령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5일
(12) 법 제26조제4항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법 제26조 제4항 법 제27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 쇄

비 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기간은 당해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9)의 (나)의 경우 1차 경고를 한 때에는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명령을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에 명시된 조업정지일 부터 (1)의 (가)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일까지, (3)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 완료일까지, (4), (8) 및 (9)의

(가)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4. (4)의 (가)의 위반행위를 5차 이상 한 자에 대하여는 이전 위반시의 처분에 더하여 추가위반행위를 한 때마다 조업정지 10일을 가산한다.

5.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질소산화물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을 제외한 다)은 (4)(가) 및 (나)의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6. 삭제 <2006.12.29>

나.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조				
(가) 적산전력계 미부착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나) 사업장안의 일부 굴뚝자동측정기 미부착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다) 사업장안의 모든 굴뚝자동측정기 미부착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라) 영 별표 2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마) 영 별표 2 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배출시설로서 6월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경 고	폐쇄		
(2)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가동시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측정항목별 상태표시(보수중, 동작불량 등) 또는 전송장비별 상태표시(전원단절, 비정상)가 1일 2회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1주동안 연속하여 4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법 제20조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3) 법 제15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법 제20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4) 법 제15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20조				
(가)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 쇄
(나) 측정기기 또는 전송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허가취소 또는 폐 쇄
(다)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5) 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5조의 2 제 5 항· 제6항				
(가)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삭제>					
(다) 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6) 법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허가취소 또는 폐 쇄			

다.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	------	-------------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항	경고	사용중지	
		조치이행 명령	사용중지	
(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항	개선명령	사용중지	
(3)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제3항	사용중지		
(4)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의2제1항·제2항, 법 제2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20조 및 법 제28조의2제7항(법 제2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라.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의3	등록취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40조의3	등록취소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0조의3	등록취소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법 제40조의3	등록취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40조의3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6) 등록 후 2년 이내에 검사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검사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0조의3	등록취소			
(7) 등록된 종류 외의 검사대행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40조의3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나)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다) 등록기준의 검사장비가 부족한 경우 (라) 등록기준의 검사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0조의3	경고 등록취소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9) 1년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가) 3회 (나) 4회 (다) 5회 이상	법 제40조의3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내지 (4) <삭제>					
(5) 법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호	인증취소			
(6) 법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	법 제35조 제2호	인증취소			

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6의2)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2호의2	경고	경고	인증취소	
(7) 법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3호	경고	경고	인증취소	
(8)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 탄화수소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 미만인 경우 또는 공기과잉률이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개선명령			
(9)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 탄화수소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초과율이 600% 이상인 경우	법 제38조 제1항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3일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5일		
(10)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매연의 농도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 미만 초과한 때 또는 3도 이상인 경우	법 제38조 제1항	개선명령			
(1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매연의 농도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 이상 초과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3일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5일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7일	
(12)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정화용촉매·연료조절장치 등 배출가스관련부품을 떼어버리거나 임의조작한 자의 경우	법 제38조 제1항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3일			
(1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8) 내지 (11)에 해당하더라도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운전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입증한 경우	법 제34조 제8항 법 제38조 제1항	개선명령			
(14) 내지 (18) <삭제>					

비 고 : 시·도지사는 위 표의 위반사항 (1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매연 여과장치 등 매연저감장치를 새로이 부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 자동차소유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자료부터 매연여과장치부착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용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바.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37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7조의6	지정취소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의6	지정취소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7조의6	지정취소		
(4)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사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37조의6	지정취소		
(5)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37조의6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6) 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장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나) 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다) 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비가 부족한 경우 (라) 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37조의6	업무정지 1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37조의6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8) 정밀검사수수료 산출기준을 초과하여 정밀검사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법 제37조의6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9) 별표 27의5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의6제3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의6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법 제37조의9	지정취소	-	-

을 받은 경우	제1호			
(2) 법 제37조의8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의9 제2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3) 법 제37조의8제4항 및 이 규칙 제92조의17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37조의9 제3호	업무정지 1월	지정취소	-
(4) 법 제37조의8제4항 및 이 규칙 제92조의17의 규정에 따른 시설·장비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37조의9 제3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37조의9 제4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의9 제5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30 환경부령 제212호]

[별표 6의5] <개정 2006.6.30>

행정처분기준(제33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처분의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처분의 종류가 같고 기간만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의 기간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 라. 같은 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한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더 무겁게 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6월을 넘을 수 없다.
-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처분을 더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더 무겁게 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6월을 넘을 수 없다.
 - (1)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더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
 - (2) 영업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 또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는 업무정지처분으로 가볍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9호, 법 제35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 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볍게 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환경영향조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4)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제14조 제1항제4호				
(가) 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나) 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7호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8) 법 제12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제14조 제1항제8호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9)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환경영향조사	법제14조	등록취소			

대행업무를 한 경우	제1항제9호				
------------	--------	--	--	--	--

나.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하여 먹는샘물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	허가 또는 등록취소			
(2) 법 제16조제4호를 위반하여 부담금 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수입한 먹는샘물을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3) 법 제17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호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 등록취 소 또는 영업장 폐쇄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동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	허가· 등록취 소 또는 영업장 폐쇄			
(5) 법 제18조제1항 후단, 동조제2항 후단,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 등록취 소 또는 영업장 폐쇄
(6)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법 제24	법 제40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7)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5호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8) 법 제27조, 이 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5호				
(가) 먹는샘물제조업자의 경우					
① 먹는샘물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② 수위·수량·수질의 자동계측시설이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게 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③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④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⑤ 표지제조자가 반출한 병마개를 운반하면서 도난·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⑥ 부담금증명표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병마개를 먹는샘물제조공장에 보관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⑦ 자가품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사		영업정	영업정	영업정	허가취

<p>레 발견시 해당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p>	<p>지 15일</p>	<p>지 1월</p>	<p>지 3월</p>	<p>소</p>
<p>⑧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부담금증명표지를 사용한 경우</p>	<p>허가취소</p>			
<p>⑨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 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 자동계수기로 계측하지 아니하거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와 기계봉합 및 봉합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경 고</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2월</p>
<p>⑩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먹는샘물제조업무에 종사시킨 경우</p>	<p>경 고</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2월</p>
<p>⑪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p>	<p>경 고</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2월</p>
<p>(나) 수처리제제조업자의 경우</p>				
<p>①식품첨가물 외의 물질을 방청제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2월</p>	<p>영업정지 3월</p>
<p>②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p>	<p>경 고</p>	<p>영업정</p>	<p>영업정</p>	<p>영업정</p>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p>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지 15일	지 1월	지 3월
<p>③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p>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p>(다)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의 경우</p>				
<p>①보관창고에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등 보관중인 먹는샘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같이 보관한 경우</p>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p>②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p>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p>③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p>④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p>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p>(라) 정수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p>				
<p>①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를 한 경우</p>	영업정지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장폐쇄
<p>②품질검사기록부(제조업자에 한한다),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p>③ 판매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하거나 수리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p>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p>④ 품목이 단종될 경우 해당품목의 부품을 단종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p>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p>⑤ 월터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체계를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p>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p>⑥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신고한 때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p>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p>⑦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p>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p>(9)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경우</p>	<p>법 제40조제1항 제5호</p>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
<p>(10)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p>	<p>법 제40조제1항 제5호</p>				
<p>(가)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의 경우</p> <p>①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등록된 사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p>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②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③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④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⑤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나) 정수기의 경우				
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
②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
③유효정수량을 표시함에 있어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
④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시·광고를 한 경우		지 15일 영업정 지 15일	지 1월 영업정 지 1월	지 3월 영업정 지 3월	폐쇄 영업장 폐쇄
⑤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또는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한 경우					
(1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5호				
(가) 먹는샘물제조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①자가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②자가검사항목의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나) 수처리제조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①자가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
②자가검사항목의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
(다) 정수기제조업자의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①자가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자가검사항목의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가검사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5호				
(13)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다 음과 같이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6호				
(가) 1일 취수량에 관한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지	영업정지 지	영업정지 지	허가취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나)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5일	1월	3월	영업정지
(14) 법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7호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15) 법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8호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6)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9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7)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10호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8)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11호				
(가) 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① 일반세균이 원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② 일반세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원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③일반세균이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④일반세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4월
⑤먹는샘물의 제조방법·보존방법·유통기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⑥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⑦그 밖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수처리제제조업자의 경우				
①주성분의 함량이 30%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②주성분의 함량이 20% 이상 30%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③주성분의 함량이 10% 이상 20%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④주성분의 함량이 10%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⑤그 밖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다) 정수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①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폐쇄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1월	2월	6월	
제거율의 40%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②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 이상 70%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6월
③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7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6월
④그 밖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6월
(19)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12호				
(가)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압류·폐기 또는 처리방법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0)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을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2항	허가·등록 취소			

(21)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또는 영업장 폐쇄 허가·등 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	--	--

비고 :

1. (3), (8)(가)②·④·⑤·⑪, (나)②·③, (다)①·③·④, (라)②·⑦, (14) 및 (18)(나)④ 중 1차 행정처분으로서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2. (18)(가)① 및 ② 중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당해 취소정의 취소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18)(가)③·④, (나)①·② 및 (다)①·②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 제품의 폐기명령을 할 수 있다.

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35조제5항 제1호	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35조제5항 제2호	지정취소			
(3) 영업정지처분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35조제5항 제3호	지정취소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35조제5항 제4호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5) 지정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5항 제5호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6) 지정된 검사기관(법정검사기관 및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35조제5항 제6호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7)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시설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35조제5항 제7호				
(가)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인력 또		지정취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나)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인력 또는 시설이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지정취소
--	--	------------	------------	------------	------

라. 표지제조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령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의5제2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8조의5제2항제2호				
(가) 지정요건에 필요한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		경 고	지정취소		
(3) 법 제28조의4제2항, 이 규칙 제26조의2제8항 및 별표 6에 따른 규격·표시방법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의5제2항제3호				
(가) 규칙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시·도시사의 반출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		경 고	지정취소		
(나) 규칙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병마개를 반출하고도 병마개 반출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지정취소		
(다) 규칙 제26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모형을 각인한 인쇄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별표 6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 고	지정취소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9.27 환경부령 제183호]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허가취소			
나.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1)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허가취소			
다.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1)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허가취소			
라. 야생동물의 수출·입등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1) 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	허가취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마.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개선명령	등록취소		
바.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제5항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2)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3)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71호]

[별 표] <개정2000.7.1, 2006.6.29>

과징금산정기준(제17조관련)

1. 적용기준

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중 영업정지 3월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법 제40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다. 과징금부과는 처분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과징금부과권자가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2. 1일 과징금부과기준

기준금액 (원/일)	업종별 매출금액(백만원/년)					
	먹는샘물제조업 (수입판매업포함)		수처리제제조업		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포함)	
30,000원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50,000원	100초과~	120이하	100초과~	120이하	100초과~	150이하
70,000원	120초과~	200이하	120초과~	170이하	150초과~	350이하
90,000원	200초과~	340이하	170초과~	250이하	350초과~	700이하
110,000원	340초과~	540이하	250초과~	360이하	700초과~	1,200이하
130,000원	540초과~	800이하	360초과~	500이하	1,200초과~	1,850이하
150,000원	800초과~	1,120이하	500초과~	670이하	1,850초과~	2,650이하
170,000원	1,120초과~	1,500이하	670초과~	870이하	2,650초과~	3,600이하
190,000원	1,500초과~	1,940이하	870초과~	1,100이하	3,600초과~	4,700이하
210,000원	1,940초과~	2,440이하	1,100초과~	1,360이하	4,700초과~	5,950이하
230,000원	2,440초과~	3,000이하	1,360초과~	1,650이하	5,950초과~	7,350이하
250,000원	3,000초과~	3,620이하	1,650초과~	1,970이하	7,350초과~	8,900이하
270,000원	3,620초과~	4,300이하	1,970초과~	2,320이하	8,900초과~	10,600이하
290,000원	4,300초과~	5,040이하	2,320초과~	2,700이하	10,600초과~	12,450이하
310,000원	5,040초과~	5,840이하	2,770초과~	3,110이하	12,450초과~	14,450이하
330,000원	5,840초과~	6,700이하	3,110초과~	3,550이하	14,450초과~	16,600이하
350,000원	6,700초과~	7,620이하	3,550초과~	4,020이하	16,600초과~	18,900이하
370,000원	7,620초과~	8,600이하	4,020초과~	4,520이하	18,900초과~	21,350이하
390,000원	8,600초과~	9,640이하	4,520초과~	5,520이하	21,350초과~	23,950이하
410,000원	9,640초과~	10,740이하	5,050초과~	6,200이하	23,950초과~	26,700이하
430,000원	10,740초과~	11,900이하	6,200초과~	6,820이하	26,700초과~	29,600이하
450,000원	11,900초과~	13,120이하	6,820초과~	7,470이하	29,600초과~	32,650이하
470,000원	13,120초과~	14,400이하	7,470초과~	8,150이하	32,650초과~	35,850이하
490,000원	14,400초과~	15,740이하	8,150초과~	8,860이하	35,850초과~	39,200이하
510,000원	15,740초과~	18,600이하	8,860초과~	9,600이하	39,200초과~	42,700이하
530,000원	18,600초과~	20,000이하	9,600초과~	10,000이하	42,700초과~	50,000이하
550,000원	20,000초과		10,000초과		50,000초과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29 환경부령 제224호]

[별표 23] <개정 2000.8.30, 2004.1.15, 2005.12.31>

행정처분기준(제88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삭제 <2005.12.31>
-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8조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5조, 법 제16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법 제18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9조	폐쇄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신고를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경우 (가)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나)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 제19조 법 제19조	사용중지명령 폐쇄			
(5)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및 (나) <삭제>					

(다)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조업정지	폐쇄, 허가취소		
(라) 법 제16조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18조	조업정지 (조업정지 기간중 조업한 기간)	폐쇄, 허가취소		
(마) <삭제>					
(6)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이행완료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18조	경고	폐쇄, 허가취소		
(7)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환경 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9) 및 (10) <삭제>					

비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기간은 당해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5)의 (라)의 경우 1차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중지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 및 (5)의 (다)는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2)는 방지시설설치완료일까지, (4)의 (가)는 가동개시일까지로 하되, 당해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소음원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법 제26조제1	공사장, 공장·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때	항	사업장에 한함	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확성기에 한함	소리의 크기조절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시간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6조제2항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3)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동소음규제지역 안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때	법 제26조의2 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비고 :

-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라 함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 (2)의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에 한한다.
- (2)의 위반사황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황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내지 (4) <삭제>					
(5) 법 제35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제1호	인증취소			
(6) 법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5조제2호	인증취소			
(7)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	개선명령			
(8)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					

차 수시점검의결과 (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법 제38조	개선명령			
(나) (7) 및 (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8조	개선명 및 사용정지 2일			

- 라. 삭제 <1997.10.22>
- 마. 삭제 <2000.8.30>
- 바. 삭제 <1999.7.19>
- 사. 확인검사대행자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검사대행자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48조의3	경 고	경 고	등록취소	
(2)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검사대행자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8조의3	등록취소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검사대행자가 구비하여야 할 시험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48조의3	경 고	경 고	등록취소	
(4)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검사대행자가 구비하여야 할 시험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8조의3	등록취소			
(5)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검사대행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의3	경 고	경 고	경 고	등록취소

아. 소음도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3 제5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	법 제49조의3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음도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5항제2호			
(3)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9조의3 제5항제2호	지정취소		
(4)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49조의3 제5항제2호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5)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9조의3 제5항제2호	지정취소		
(6) 법 제49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의3 제5항제3호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7)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검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49조의3 제5항제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지정취소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18 환경부령 제221호]

[별표 17]

행정처분기준(제77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	--	--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p> <p>(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p> <p>(나)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p>	법 제39조, 법 제40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p>(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p>	법 제42조 제1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p>(3)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법 제42조 제5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p>(4)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p> <p>(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p> <p>(나)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방지시설을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p>	법 제39조, 법 제42조 제5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p>(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p>	법 제42조 제5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p>(6)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p> <p>(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p>	법 제42조 제3호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업정지 30일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 방지사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인정을 받은 희석배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희석인정 취소
(바)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 (6)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조업정지 3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7)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5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8)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법 제42조 제5호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9)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9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0조 법 제42조 제5호 법 제42조 제5호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0)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한다)내에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하였으나 검사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동일한 항	법 제39조, 법 제40조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1)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가)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나)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당해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라) 당해 지역이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법 제44조 본문 법 제44조 단서 법 제44조 단서 법 제42조 제5항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12)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법 제42조 제5호	환경 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 일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5 일 조업정지 5 일
(13)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 제5호	경고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 비고 :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의 기간은 영 제13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9)의 (나)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명령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4)의 (가)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완료일까지, (9)의 (가)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5)와 (11)의 (가)의 경우에는 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일까지로 한다.
 4. (6)의 (가) 내지 (바)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6)의 (가) 내지 (바)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 차수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5. (2), (4) 내지 (6), (8) 및 (9)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각각 적용한다.
 6.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10)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당해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 이상 600%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 이상 3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7.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최근 1년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3)·(7) 또는 (12)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당해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 나.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영 제10조제1호에 따라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 제3항, 법 제39조				
(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개선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개선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 제10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 제3항, 법제42조				
(가)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폐수수탁처리계약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폐수위탁처리시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바)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 그 밖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 제3항, 법 제39조 법 제40조				
(가) 폐수(위탁처리폐수 및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에 배출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된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처리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폐수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그 밖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비고 : 1. 위 표 중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3)의 (가)의 경우 조업정지기간은 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부터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나)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정지 명령	허가취소		
(4)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 폐수와 혼	법 제42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p>합하여 처리한 경우</p> <p>(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p> <p>(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p>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조업정지 3일	허가취소		
(5) (5)의(가) 내지 (바)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허가취소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7)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8)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9)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44조				
(가) 당해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사용중지			
(나)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쇄명령			
(다) 당해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폐쇄명령			
(10)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환경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경우		기술인 선임명령		5일	10일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무인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비고 : 1. 사용중지기간은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2. (4)의 (가) 내지 (마)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4)의 (가) 내지 (마)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차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3)의 조업정지기간은 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일까지로 한다.

4. (8)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명령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하되,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법 제53조제3항 및 영 50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관리·운영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나)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 제53조 제4항	방지시설설치명령 방지시설개선명령			

마. 기타 수질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 제5항, 법 제44조	경고	사용중지명령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사용중지 명령	
(2)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조치가 부적합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4항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비고 :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비교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로부터 (1)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변경신고일까지, (2)의 경우에는 조치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바.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4조 제1호 본문	등록취소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2호	등록취소			
(3)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영업 활동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 제3호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3 월	등록취소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64조 제6호	등록취소			
(5)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64조				
(가)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나) 1월 이상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다)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라)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전혀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마)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 월
(바)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사) 처리시설이 등록기준에 위반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영업정지 3 월
(아) 기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6)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7) 운반차량과 관련하여	법 제64조				
(가)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영업정지 3 월
(나) 운반차량에 표시가 없는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반차량을 증차 또는 감차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라) 타인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폐수를 운반하거나 성상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하여 운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8) 폐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경우	법 제64조 제5호				
(가) 취수중단 또는 사람 및 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영업정지 3월이상 또는 등록취소	등록취소		
(나) 그 밖의 경우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3 월	영업정지 6 월	등록취소
(9) 방지시설의 결함, 가동요원의 기술미숙 등으로 처리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10) 폐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11)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12) 휴업·영업정지사항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13) 반기별 처리실적 보고를 지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14) 변경등록을 태만히 한 경우 [(7) (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15) 폐수인수·인계에 따른 폐수위(수)탁 확인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16)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법 제64조	등록취소			
(17) 해양오염방지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64조	등록취소			
(18)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에 불참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19) 폐수위(수)탁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법 제64조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3 월	등록취소	
(20)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폐수처리업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3 월	등록취소	
(21)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법 제64조	영업정지 3 월	등록취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22) 폐수방류구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하거나, 시료채취가 쉽지 아니하도록 설치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0일	등록취소
(23) 그 밖에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비고 : 폐수처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 가목의 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병행될 때에는 그 기준 중 제2호 마목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처분한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가.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계획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가) 당해지역이 악취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나) 당해지역이 악취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2)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법 제13조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경 고	사용중지명령		
	법 제21조	경 고	사용중지명령		
	법 제11조	사용중지명령			
	법 제11조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비 고

사용중지기간은 사용중지처분서에 명시된 사용중지일부터 (1)(가) 및 (2)의 경우에는 신고 및 변경신고 완료일까지, (3)의 경우에는 악취방지조치 완료일까지, (4) 및 (5)의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나. 악취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	지정취소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19조	지정취소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가)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나)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다)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라)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4)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5) 업무정지기간중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19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법 제19조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4.4 대통령령 제19991호]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가.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나.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1)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을 초과한 경우 라. 수렵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마.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바. 법 제14조·제19조·제23조·제50조 또는 제55조에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하고자 한 자	법 제49조제1항제3호	면허취소	
	법 제49조제1항제4호	면허취소	
	법 제44조제3항	면허정지3월	
		면허취소	
	법 제48조제2항	면허취소	
	법 제49조제2항	면허정지3월	면허취소
	법 제49조제1항제5호	면허취소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환경부령 179호]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26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5항 또는 제7항	조업	조업
(2) (1)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기간중 조업한 경우		조업	폐쇄		

※ 비고 : (2)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중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46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마.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후
(1)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호·제36조제1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호·제36조제2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7조제3호·제36조제3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4)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7조제4호·제36조제4호	영업정지 1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5)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5호·제36조제5호	영업정지 1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7조제6호·제36조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7) 등록 또는 허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제7호·제36조제7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8)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배출량 조사에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p>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가) 당해 사업장에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p> <p>(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p>		<p>경고</p> <p>경고</p>	<p>영업정지 5일</p> <p>경고</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5일</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1월</p>
<p>(9)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p>	<p>경고</p>	<p>영업정지 5일</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3월</p>
<p>(10)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p>	<p>경고</p>	<p>경고</p>	<p>경고</p>	<p>영업정지 15일</p>
<p>(11) 법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요건이 등록 또는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p> <p>(가)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유독물이 누출된 경우</p> <p>(나)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다) 그 밖에 시설·장비 등이 노후화 또는 미달되거나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p>	<p>개선명령</p> <p>개선명령</p> <p>개선명령</p>	<p>영업정지 5일</p> <p>개선명령</p> <p>개선명령</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5일</p>	<p>영업정지 6월</p> <p>영업정지 6월</p> <p>영업정지 1월</p>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12)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1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가) 가·수시검사일을 초과한 기간이 1년 이내 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나) 가·수시검사일을 초과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4) 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5)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16)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가)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나)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17)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와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가)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유독물관리 자선임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나)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이 미달된 경우		유독물관리 자변경명령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다)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18)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 8호·제36조제 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월
(19)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 8호·제36조제 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20)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 8호·제36조제 8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1)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법 제27조제 8호·제36조제 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22)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법 제27조제 8호·제36조제 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2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 8호·제36조제 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24) 영업정지처분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제 8호·제36조제 8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별표 6]

위반행위의 중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제47조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유독물의 연간 제조 또는 사용량 (톤)		
	1,000 미만	1,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 요건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3,000	6,000	18,000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000	6,000	18,000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200	3,000	6,000
(4)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000	12,000	30,000
(5)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000	12,000	30,000
(6)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0	6,000	18,000
(7)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6,000	12,000	30,000
(8)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요건이 허가	3,000	6,000	18,000

기준에 미달된 경우			
(9)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000	12,000	30,000
(10)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200	3,000	6,000
(1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1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14)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15)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16)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17)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18)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각물질의 판매 또는 제공금지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19)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600	1,800	4,200
(20)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600	1,800	4,200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

비고 : 위 표에서 "유독물의 연간 제조 또는 사용량"이라 함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당해연도 직전 1년간의 제조 또는 사용량을 말한다. 다만, 영업개시 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제조 또는 사용량을 말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별표 12] <개정 2005.6.30>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1조4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조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의6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법 제23조의6제9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3)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법 제23조의6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4)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의6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5) 법 제15조의6제4항의 규정에	법 제23조의6제9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0일	20일	30일	60일
의한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6제1호				
(6)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법 제23조의 6제2호				
(가) 지정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 월	업 무 정 지 3월	업무정지 6 월
(나) 지정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다) 구비하여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 월	업 무 정 지 3월	업무정지 6 월
(라) 구비하여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마) 구비하여야 할 실험실(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월 이상 없는 경우		지정취소			
(바) 구비하여야 할 실험실의 면적이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 월	업 무 정 지 3월	업무정지 6 월
(7)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의 6제9호	경고	업무정지 1 월	업 무 정 지 3월	업무정지 6 월
(8)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3조의 6제3호				
(가) 법 제23조의3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의3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3월 이내에 개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9)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 6제4호	지정취소			
(10) 법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법 제23조의 6제5호	업무정지 6 월	지정취소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의 6제6호	업무정지 6 월	지정취소		
(1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법 제23조의 6제7호	경고	업무정지 1 월	업 무 정 지 3월	업무정지 6 월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13)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이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법 제23조의 6제8호	지정취소			
(14)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3조의 6제9호	경고	업 무 정 지 10일	업 무 정 지 20일	업 무 정 지 30일
(15) 업무정지처분기간중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 6제9호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16)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하여 검사성적서를 발행한 경우	법 제23조의 6제9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 무 정 지 6월	지정취소
(17) 1년에 3회 이상 이법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 6제9호				
(가) 3회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1월			
(나) 4회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3월			
(다) 5회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6월			

나.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의 10제1호	등록취소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 10제2호	경고	영 업 정 지 1월	영 업 정 지 3월	영 업 정 지 6월
(3)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3조의 10제3호				
(가) 법 제23조의3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의3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등록취소			

하나에 해당함에도 3월 이내에 개입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법 제23조의 10제4호					
(가)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다) 구비하여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라) 구비하여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마) 구비하여야 할 사무실이 1월 이상 없는 경우		등록취소				
(바) 구비하여야 할 사무실 면적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5)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 23 조 의 10제5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6)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 하여 하도급한 때	법 제23조의 10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8 해양수산부령 제349호]

[별표 29] <개정 2000.2.11>

행정처분기준(제116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
- 마. 폐기물운반선을 2척 이상 보유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운반선에 대한 사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횟수는 선박별로 통산한다.

2. 개별기준

제1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21조	등록취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21조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가) 2회 (나) 3회 이상	법 제21조	영업정지 6월			
(4)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때 (가) 해양배출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배출한 때 (나) 지정받은 배출해역외의 해역에 배출한 때 (다) 폐기물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1조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1조	운 반 선 사용정지 1월 경 고	운 반 선 사용정지 3월 경 고	운 반 선 사용정지 6월 영업정지 15일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나) 저장시설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 폐기물운반선이 없게 된 때 (라) 폐기물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7) 영업정지처분기간중 영업을 하거나 폐기물운반선 사용정지처분기간중에 운반선을 운항한 때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8)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등록취소	경 고	운 반 선 사용정지 1월	운 반 선 사용정지 3월
		경 고	운 반 선 사용정지 1월	운 반 선 사용정지 3월	운 반 선 사용정지 6월

	법 제21조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	--------	-----	-----	-------------	-------------

나. 방제·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44조	등록취소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름등폐기물의 처리를 한 경우	법 제44조				
(가) 고의로 기름등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때		등록취소			
(나) 과실로 기름등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되게 한 때		경 고	경 고	등록취소	
(다) 기름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위반하여 처리한 때		경 고	경 고	경 고	등록취소
(3)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가) 기술인력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44조				
(나) 선박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다) 장비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라) 장비 등이 등록요건에 맞도록 유지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경 고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6월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별표 13] <개정 2000.2.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55조제3항관련)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79조제1호	50만원
2. 법 제9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부 또는 대장을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79조제2호	70만원
3. 법 제9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부 또는 대장을 허위로 기재한 자	법 제79조제2호	60만원
4.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79조제3호	50만원
5.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 제79조제4호	50만원
6. 및 7.<삭제>		
8.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법 제79조제7호	70만원
9.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79조제8호	70만원
10. 내지 12.<삭제>		
13. 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기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법 제79조제11호	50만원
14.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기관리인임명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79조제12호	30만원
1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79조제13호	50만원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별표 2] <개정 2006.2.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전 최근 2년간(제2호 (10)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다) 1월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라)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마)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장비로 환경현황을 조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법 제12조제1항 제8호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경 고		경 고	업무정지15 일	업무정지 1월	
(2) 법 제8조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3) 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5) 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6)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서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7)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8)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10) 등록한 후 2년 이내에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향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7호	경 고	등록취소		
(11)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영향평가 대행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별표 2] <개정 2001.6.27>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 라.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은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지정 취소			
(2)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환경관련업자의 당해 환경관련업이 취소된 경우(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 한함)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지정 취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업무 정지6 월	지정 취소		
(4) 지정후 1년이내에 관리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관리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지정 취소			
(5) 업무정지처분기간중 업무를 한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지정 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 한함)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업무 정지1 월	업무 정지3 월	지정 취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대행하는 사업장이 2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 한함)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 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사업자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업무 정지3 월	업무 정지6 월	지정 취소	
(9)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경고	업무 정지1 월	업무 정지3 월	업무 정지6 월
(10) 관리대행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가) 및 (나) <삭제>				
(다)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1 월	업무 정지3 월	업무 정지6 월
(라)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마)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중 일부가 부족 또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고	업무 정지1 월	업무 정지3 월	지정 취소
(바) 시료채취 또는 운반용 차량이 없는 경우	업무 정지1 월	업무 정지3 월	지정 취소	
(사) 실험실 면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1 5일	업무 정지1 월	업무 정지3 월
(아) 실험실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자) 및 (차) <삭제>				

비 고 : 유독물관리 대행기관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30 환경부령 제 213호]

[별표 8] <개정 2005.7.1, 2006.6.30>

행정처분기준(제54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위반횟수를 적용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가.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가) 2회 (나) 3회이상 (2) 지정후 2년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가)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나)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다)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라) 시설 및 장비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이상 방치한 경우	법 제15조제4항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법 제15조제4항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법 제15조제4항	지정취소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도검사 및 검정의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제4항	지정취소			
	법 제15조제4항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6)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정도 검사 또는 검정업무를 한 경우	법 제15조제4항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7) 법 제1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조제4항	지정취소		

비고 : (3)의 (가) 및 (나)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이상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가) 2회 (나) 3회이상	법 제17조제3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2) 등록을 한 후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	등록취소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기술능력이 없는 경우 (나)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다)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가 없는 경우(소음·진동분야는 실험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실험실이 없는 경우(소음·진동분야를 제외한다) (마) 전기·하수도 및 실험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실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소음·진동분야를 제외한다.) (바) 사무실이 없는 경우(소음·진동분야에 한한다.) (사)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중	법 제17조제3항	등록취소 경 고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법 제17조제3항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p>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이상 방치한 경우 (아) 측정업무용 차량이 없는 경우 (자) 등록된 차량의 구비요건이 미비된 경우(소음·진동분야를 제외한다.)</p>		<p>등록취소</p> <p>경 고</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1월</p> <p>경 고</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3월</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3월</p> <p>등록취소</p> <p>영업정지 3월</p>	<p>등록취소</p> <p>등록취소</p>
<p>(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p>	<p>법 제17조제3항</p>	<p>등록취소</p>			
<p>(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측정대행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산정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p>	<p>법 제17조제3항</p>	<p>영업정지 3월</p>	<p>영업정지 6월</p>	<p>등록취소</p>	
<p>(6)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3월</p>	<p>등록취소</p>	
<p>(7)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15조제4항</p>				
<p>(가) 시표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또는 시약소모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경 고</p>	<p>영업정지 3월</p>	<p>영업정지 6월</p>	<p>등록취소</p>
<p>(나) 측정결과의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측정결과를 허위로 산출한 경우</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3월</p>	<p>등록취소</p>
<p>(다) 측정기록부를 의뢰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p>		<p>경 고</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1월</p>
<p>(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경 고</p>	<p>경 고</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5일</p>
<p>(8)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측정대행업무를 한 경우</p>	<p>법 제17조제3항</p>	<p>영업정지 3월</p>	<p>등록취소</p>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9) 법 제1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	등록취소			
----------------------------------	-----------	------	--	--	--

비고

1. (3)의 (가) 및 (나)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3)의 (다) 및 (사)에서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비 및 기기를 말한다.
 - 가. 대기분야 : 피토티관·흡입관·가스미터·기압계·고온온도계·진공펌프·마노미터·산소측정기·건조기·분광광도계(또는 원자흡광광도계)·증류수제조기·화학천평 및 킬달분해장치
 - 나. 수질분야 : BOD부란기·수욕조·건조기·분광광도계(또는 원자흡광광도계)·증류수제조기·pH계·비화수소발생장치·COD환류장치·ECD가스크로마토그래프·화학천평 및 킬달분해장치
 - 다. 소음·진동분야 : 소음계·소음도기록계 및 소음계의외부조정기
 - 라. 실내공기질 분야 :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열탈착장치·미니 불륨에어샘플러·전자저울·위상차현미경·일산화탄소측정기(비분산적외선법, 자동)·이산화탄소측정기(비분산적외선법)·오존측정기(자외선광도법)·이산화질소측정기(화학발광법)·라돈연속모니터측정기 및 총부유세균측정장비(Bio air sampler)

마. 악취 분야

- (1) 복합악취 : 시료채취장치·무취공기제조장치 및 악취희석장치
-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중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 : 시료채취장치·악취농축장비·열탈착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액체크로마토그래프·흡광광도계중 측정항목별로 갖추어야 할 장비

다.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가) 2회 (나) 3회이상	법 제18조제5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2) 등록후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8조제5항	등록취소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다) 기술능력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전혀없는 경우 (라) 기술능력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부족한 경우(수질분야에 한한다)	법 제18조제5항	등록취소 경 고 등록취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법 제18조제5항	영업정지	등록취소		

를 사용하여 방지시설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항		6월			
(5) 도급받은 방지시설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등록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7) 법 제18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제5항	등록취소				
(8)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9)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등록취소				
(10) <삭제>						

라. 환경건설팅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관련조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9조의6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의6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인력요건이 미달된 경우	법 제19조의6제3호			
(가)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지원중단 6월	등록취소
(나)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취소		
(4) 환경건설팅회사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9조의6제4호	경고	등록취소	
(5)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법 제19조의6제5호	경고	경고	등록취소

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	지정취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호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호	지정취소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3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4)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3호의2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2조 제4호				
(가) 인증기준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나) 인증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6)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5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7) 법 제32조제2항에 위반하여 인증기관이 인증한 제품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6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8) 업무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한 경우	법 제22조 제7호	지정취소			

2. 폐기물 관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9 환경부령 제226호]

[별표 3]

행정처분기준(제32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	법 제25조제1항제6호				

관·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가) 중간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1)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다)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때	법 제25조제1 항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3)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법 제25조제1 항제6호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법 제25조제1 항제6호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1 항제6호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6)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때	법 제25조제1 항제6호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1 항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8)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자본금·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때	법 제25조제1 항제4호				
(가) 시설이 미달된 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1)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장비·기술능력·자본금·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9)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0)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1)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가)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중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주된 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2)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허가취소			
(14)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15) 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6)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7)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9)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월			
(2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2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품질인증을 영위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5호	허가취소			

비 고

(16)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수는 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5 대통령령 제 19828호]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1항관련)

위 반 행 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4) 법 제 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6)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8)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자본금·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9)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0)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5천만원	1억원
(11)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2)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3) 법 제 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5)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때	-	5천만원	1억원
(16)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1억원
(17)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천만원	-	-
(1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9)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때	-	5천만원	1억원
(20)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품질인증을 영위한 때	-	5천만원	1억원
(21)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5천만원	1억원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 215호]**

[별표 24] <개정 2003.9.6>

행정처분기준(제109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가.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	------	-------------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6조제1호 내지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때	법 제37조	허가취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취소			
3)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허가취소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때					
가) 변경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때		영업정지1월 경 고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6월 영업정지3월	허가취소
나) 변경신고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때					영업정지6월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 등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때		영업정지6월	허가취소		
6)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허가취소			
7) 허가받은 업종외의 분뇨등관련영업을 한 때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8) 분뇨·축산폐수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때					
가) 분뇨·축산폐수수집·운반기준 위반					
(1) 수집·운반한 분뇨·축산폐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외의 장소에 버린 때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 기타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분뇨·축산폐수처리기준 위반					

(1) 분뇨·축산폐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때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 기타 분뇨·축산폐수처리 기준을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9)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나)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다)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라) 흡인식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마) <삭제>				
바)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0)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기준을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2)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3) 분뇨등관련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4) 기술요원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때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5)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6)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출입·검사를 방해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7) 영업정지처분기간중 영업을 한 때	허가취소			

나.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6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때	법 제40조	등록취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등록취소				
3)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4)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때					
가) 변경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때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나) 변경신고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때	경 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5) 등록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등록취소				
6) <삭제>					
7)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가)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경 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등록취소	
나)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때	경 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등록취소	
다)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또는 제도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경 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등록취소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9) 설계·시공업자가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때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10) 설계·시공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11)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12)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경 고	경 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13) 서류·시설 또는 장비등의 출입·검사를 방해한 때	경 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14) 영업정지처분기간중 신규 계약에 의하여 영업을 행한 때	등록취소				

때 15)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	--	--------	------	--	--

다.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6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때	법 제40조	등록취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등록취소			
3)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4)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때					
가) 변경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때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나) 변경신고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때		경 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5) 등록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등록취소			
6) 등록된 제품외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때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7)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가)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경 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등록취소
나) 공장이 없는 때		경 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등록취소
다) 제조시설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경 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등록취소
라)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경 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등록취소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9) 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제조·판매한 때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성능기준에 부적합하게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제조·판매한 때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나) 등록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구조·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판매한 때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다) 재질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판매한 때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라) 기계·장비 등 부품의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판매한 때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마) 품질표시기준에 부적합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등록취소
10) 자기가 등록한 시설·장비 및 공장안에서 제조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11) 기타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12)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경고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13)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출입 검사를 방해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14) 영업정지처분기간중 영업을 한 때	등록취소			
15)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16)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마. 흡인식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때		800
7.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청소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5조제4항	800
8. 기준을 초과하여 처리요금을 받은 때	법 제35조의3제1항	400
	법 제35조의3제2항	800
9. 분뇨등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때를 포함한다)		
10. 기술관리인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3조	800
11.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 제44조	800
12. 시설·사업장 등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검사를 방해한 때	법 제46조제1항	800

[별표 8] <개정 2003.7.25>

과태료의 부과금액(제35조제3항관련)

부 과 대 상	과태료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가. 처리용량 1m ³ /일 이하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	20	4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	40	8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30	60	1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50	100	200
나. 처리용량 1m ³ /일 초과 5m ³ /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20	40	8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	30	60	100

만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40	80	1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70	120	220
다. 처리용량 5m ³ /일 이상 10m ³ /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30	60	1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	80	1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50	100	2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00	150	250
라. 처리용량 10m ³ /일 이상 20m ³ /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40	80	15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	100	2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70	120	22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20	200	300
마. 처리용량 20m ³ /일 이상 50m ³ /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50	10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70	120	22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00	150	2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50	250	350
바. 처리용량 50m ³ /일 이상 100m ³ /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70	120	22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00	150	2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20	200	300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사. 처리용량 100m ³ /일 이상 300m ³ /일 미만	200	300	400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0	150	25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2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50	250	3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아. 처리용량 300m ³ /일 이상	250	350	450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20	200	3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50	250	3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300	400	500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가. 처리대상인원 10인 이하	10	20	30
나. 처리대상인원 10인 초과 20인 미만	20	30	40
다. 처리대상인원 20인 이상 30인 미만	30	40	50
라. 처리대상인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40	50	60
마. 처리대상인원 50 이상 100인 미만	50	60	80
바. 처리대상인원 100인 이상 500인 미만	60	70	90
사.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	70	80	100
3.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0	70	100
4.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아니한 자	30	40	50
5.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신고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6.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300	400	500

7. 법 제12조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00	100	100
8. 법 제13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100	100	100
9.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가. 처리용량 1m ³ /일 이하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10인 이하의 단독정화조	10	20	30
나. 처리용량1m ³ /일 초과, 5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10인 초과 20인 미만의 단독정화조	20	30	40
다. 처리용량 5m ³ /일 이상, 10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20인 이상 30인 미만의 단독정화조	30	40	50
라. 처리용량 10m ³ /일 이상, 20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단독정화조	40	50	60
마. 처리용량 20m ³ /일 이상, 50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단독정화조	50	60	80
바. 처리용량 50m ³ /일 이상, 300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단독정화조	60	70	90
사. 처리용량 300m ³ /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의 단독정화조	70	80	100
아.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의 축산폐수처리시설	50	70	100
자.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 대상의 축산폐수처리시설	30	50	70
10.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1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50	70	100
12.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1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14. 법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30	40	50
15.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50	70	1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70	100	1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100	150	22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0	300	400
마.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0	400	500
16.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50	50	50
17.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자	300	400	500
나.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 대상자	100	200	300
18.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19.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50	70	100
20. 법 제35조제1항·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100	100	100

자			
21.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00	100	100
22. 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	100	100	100
23.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	100	100
24. 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	100	100
25. 법 제39조의3제2항,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 또는 검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	100	100
26.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27.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처리담당자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28. 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50	70	100
29. 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40	50
30.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	50	70	100

비 고

1. 최종 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차수계산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2.14 환경부령 제228호]

[별표 16] <개정 2005.1.19, 2007.2.14>

행정처분기준(제64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때	법 제28조제 5호	허가취소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법 제28조제 5호				
(가) 처리기준 및 방법중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나)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3 월	영업정지 6월	
(다)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①폐기물이 유출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②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라)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3) 법 제25조제4항·제5항 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제 5호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4)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제 5호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5) 법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제 3호의2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6) 법 제2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위법 사실이 확인된 때	법 제28조제3호의3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7) 및 (8) <삭제>					
(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미달된 때	법 제28조제4호				
(가) 시설이 미달된 때					
①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주차장이 없는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② ① 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장비가 미달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다) 기술능력이 미달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0) 법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28조제5호				
(가)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나) 기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1)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때	법 제28조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제 1 주제 환경분야 행정처분의 법제현황 및 논의점

(12)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28조제5호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허가취소
(13) 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법 제28조제5호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허가취소	
(14)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8조제5호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허가취소
(14의2) 법 제26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제5호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허가취소	
(15)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28조제3호	허가취소			
(1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	법 제28조제5호	허가취소			
(17) 법 제3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때	법 제28조제5호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허가취소	
(18)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때	법 제28조제5호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나) (가) 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9)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28조 제5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0)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 제5호	영업정지6 월	허가취소		
(21) 법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제 5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제 5호	영업정지 1월			
(2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제 5호				
(가) 장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기록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장부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4) 법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제 5호	허가취소			
(25)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28조제 5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6)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적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제 5호	경 고	영업정지1 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28조제 5호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비 고

(18)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월간 폐기물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5 대통령령 제19827호]

[별표 4] <개정 2004.7.13>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1조관련)

위 반 행 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 법 제25조제4항·제5항 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4) 법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때	-	5천만원	1억원
(5) 법 제2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위법사실이 확인된 때	-	5천만원	1억원
(6) 및 (7) <삭제>	-	5천만원	1억원
(8) 법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미달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0)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1)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2) 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3)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5천만원	1억원
(14) 법 제3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때			
(15) 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6) 법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때	-	5천만원	1억원
(17) 법 제3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1억원
(18)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천만원	-	-
(19) 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때 또는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0)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5천만원	1억원
(21)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

Ⅲ.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1.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① 제재처분에 한정하여 정비한다
②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원칙적으로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③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정비한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⑤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⑥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도록 정비한다
⑦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정한다
⑧ 행정처분의 기준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⑨ 공표된 것과 다른 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수정) - 종전: 가중-감경 재량처분의 근거는 그대로 존치한다. 다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③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대상 및 내용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처분기준에서 정하도록 한다 (수정) -종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여부는 과징금 처분기준에서 정하도록 정비한다.
④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중국적으로 허가취소가 아니라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비한다. 그리고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반드시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정비한다
⑤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⑥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3.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정비한다
② 경고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③ 의무위반자별로 개별화하여 정비한다
④ 과징금 상한액을 실효성 있게 정비한다

IV.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향

- ▶ 2006년도 정립된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우선적 적용
- ▶ 환경행정관련 법령의 특색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특징 파악
- ▶ 주요국가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별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 실무상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운용 현황 고찰
- ▶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마련

제 2 주제

환경행정법의 특성과 행정처분기준

발 표 : 고문현 (울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환경행정법의 특색과 환경행정처분 기준의 문제점

고 문 현

(울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서론

오늘날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성장의 부수비용(Nebenkosten des Wachstums)이 아니라 생존의 條件,¹⁾ 특히 “現代國家의 宿命的 課題”(Schicksalsaufgabe des modernen Staates)²⁾ 내지는 공통의 관심사³⁾가 되었다. 이렇듯 環境問題가 國家의 최우선과제이자 全地球的인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環境國家⁴⁾의 대두에 부응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환경상황 하에서 전통적인 國家 3요소설은 지나치게 협소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존능력이 있는 國家는 오늘날 國民, 主權 그리고 領土 그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는 자기의 계속적인 생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할 영토상의 그리고 영토를 둘러싼 環境을 필요로 한다.⁵⁾ 따라서 한 國家의 最高法인 憲法에서 環境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環境保護를 憲法에 수용⁶⁾하

1) 洪準亨, “환경정책의 실행수단으로서 환경기준(상)”, 『사법행정』, 1993.5, 42쪽; 洪準亨, □□환경법□□, 박영사 2005, 4쪽.

2) Rüdiger Breuer, “Umweltschutzrecht”, in: I. v. Münch/E. Schmidt-ABmann(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9. Aufl., 1992, 396쪽; Reiner Schmidt, Einführung in das Umweltrecht, 4. Aufl.,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95, X X VI; Ulrich Dempfle/Hans Jürgen Muggenborg, “Die Umwelt, ein Rechtsbegriff?”, NuR, 1987, 301쪽.

3) Hofmann, H., “Technik und Umwelt”, in: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E. Benda/W. Maihofer/ H. J. Vogel(Hrsg.), 2. Aufl.,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94, 1005쪽 Rn. 1.

4) 環境國家의 개념은 상당히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생활기반의 수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함께 형성해 가는 환경형성국가(Umweltgestaltungsstaat)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M. Kloepfer, “Auf dem Weg zum Umweltstaat”, in: Umweltstaat, M. Kloepfer(Hrsg.), SpringerVerlag, Berlin u. a., 1989, 43-44쪽 참조.

5) M. Kloepfer, “Auf dem Weg zum Umweltstaat”, 39쪽.

6) 憲法에 環境保護를 규정하는 것은 法律에 의한 環境保護規定보다도 다음과 같은 長點을 제공한다. 즉 헌법에 환경보호를 규정함으로써, ①환경보호를 법규범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서 달성할 수 있으며, ②환경보호가 입법부의 다수파에 의거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헌법에 규정된 환경보호는 헌법 개정이 통상 가중된 요건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법질서에 있어서 더욱 확고히 근거 지어지게 된다. ③국가의 최고법으로서, 헌법규정은 시민이 따르는 모델이 되는 정책을 촉진하며, 또한 공중의 의론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향도하며, ④적절한 구제를 제공한다. ⑤환경보호목표를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법질서의 가장 높고 가장 가시적인 차원에서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E. Brandel & H. Bungert, Constitutional Entrench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Harv.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16: 1, 1992, 4-5쪽.

는 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憲法改正에 의한 明示的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憲法規定의 解釋에 의한 默示的인 방법이다. 첫 번째의 방법에 의해서 도입된 헌법상 환경보호규정의 구체화로서의 환경행정법에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을 정비·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과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심각하고 구조적인 환경문제의 상황 하에서, “현행법의 체계를 소극적 공해의 규제에 주안점을 둔 공해대책법으로부터 환경보전법으로 탈피시킬 것이 요망된다.”⁷⁾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공해행정법은 소극적인 경찰목적을 넘어서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한 환경행정법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는 무의사결정이론(無意思決定理論, Non-decision Making Theory)⁸⁾으로 이해될 수 있는 압축성장(Condensed Growth)을 하였고, 이러한 성장의 과정에 수반되는 효과인 환경오염의 악화를 겪은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⁹⁾ 이러한 환경오염의 악화를 막거나 적어도 최소한 현재의 환경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환경정책¹⁰⁾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환경입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환경입법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7년 1월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은 총 40개 법률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입법 중 환경행정법을 중심으로 그 특색을 알아 본 후 환경행정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보전관련법령 및 폐기물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과 관련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환경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1. 의 의

(1) 환경의 개념

환경이란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환경이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이에선 자연환경 외에 인간이 창조한

7) 原田尙彦, 環境法, 弘文堂, 平成6年, 25쪽.

8) Peter Bachrach & Morton Baratz, Power and Poverty, N. Y. :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58-62쪽.

9) 세계경제포럼(WEF)이 2005년 1월 2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현재의 환경·사회·경제 조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계량화·비교하는 국제평가지수,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ESI)]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순위는 146개국 중 122위이다. http://210.114.108.6/epic_attach/2005/R0501390.hwp; 최근의 우리나라 환경상황에 대하여는 환경부, □□2006 환경백서□□, 2006, 313-314쪽, 350-356쪽(자연환경현황), 323-324쪽(백두대간의 훼손실태), 376-388쪽(대기환경현황), 402-406쪽(교통공해현황), 419-423쪽(소음진동현황), 448-452쪽(수질현황), 495-504쪽(해양환경현황), 578-581쪽(토양오염현황), 600쪽(지하수오염현황), 609-610쪽(폐기물발생현황) 참조.

10) 환경정책은 공공문제의 하나인 환경문제의 해결과 현 상태의 환경을 유지·개선하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을 의미한다. 정희성·변병설, □□환경정책의 이해□□, 박영사, 2006, 87쪽.

물적환경 및 사회환경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환경은 자연환경에서 사회환경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실정법 중에서 환경을 정의한 규정이 보이기도 하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정의하면서(동법 제3조 1호), 자연환경을 “지하·지표(해양을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으로 정의하고(동조 2호), 생활환경을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으로 정의한다(동조 3호).

(2) 환경행정의 개념

환경행정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행정활동이다. 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동조 5호).

(3) 환경행정법의 개념

환경행정법은 환경행정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따라서 환경행정법은 적극적인 복리목적적 법체계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환경행정법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경제(규제·정서)행정법, 국토개발행정(지역정서행정)법 등과 더불어 규제행정법, 생활공간행정법 또는 개발정서행정법의 일환으로 다루는 이도 있다.¹¹⁾ 물론 환경행정법은 토지행정법 및 경제(규제·정서)행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행정법은 이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특색을 부인할 수도 없다.

결국 환경행정은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주체의 행정활동이며, 행정계획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환경행정법은 목표와 수단을 중핵으로 하는 법구조라고 말할수 있다. 즉 환경행정법은 환경보전, 구체적으로는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제거하는 것, 현실의 환경위험을 배제하는 것 및 예방조치에 의하여 장래의 환경위험을 회피함을 목표로 하며, 환경목표를 보다 구체화함과 동시에 이들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¹²⁾

11) 김도창, 일반행정법론(하), 청운사, 1993, 517쪽; 박윤훈,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4, 730쪽;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법문사, 1996, 577쪽.

12) 김철용, 행정법II, 박영사, 2007, 599쪽.

(4) 환경행정법형식의 발전단계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행정법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형식들은 시장을 전제로 당사자들의 조정·협상을 보조하는 것(환경행정법 형식의 제1단계로서 소송에 기초한 규제와, 제2단계로서 정보공개에 의한 규제)에서 시작하여, 정부의 직접적 개입(환경행정법 형식의 제3단계로서 명령규제방식에 의한 규제)을 거쳐, 다시 시장기제(환경행정법 형식의 제4단계로 경제적 유인책에 의한 규제)로, 그리고 경제와 환경의 통합을 도모하는 방향(환경행정법 형식의 제5단계로서 통합오염관리방안에 의한 규제)으로 발전하고 있다.¹³⁾

환경행정법 규제의 일단계는『소송에 기초한 규제방법』인데, 이는 환경침해에 관하여 민법상 책임원리를 입법적으로 대폭 수정하여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종합환경조치·보상책임법이나,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같은 특별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사법이론을 입법적으로 수정한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상 무과실책임, 연대책임의 특칙이 있을 뿐이다.

환경사법의 한계는 법원의 제도적 취약성과 소송의 비합리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환경위험의 평가와 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 결과 탄생한 것이 포괄적 행정규제 즉 환경행정법이다.

환경행정법 형식의 이단계는『정보공개에 의한 규제』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이 목적을 위한 대표적인 법이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도 부수적으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지키면 족한 절차적 규율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대상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 즉 승인기관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놓고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규율도 겸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환경행정법 형식의 삼단계는 일반국민 또는 행정부처에『명령통제방식에 의하여 공법적 의무를 부과』를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행정법의 중심을 이룬다고 하겠다. 명령통제방식의 i) 첫 번째 수단은 환경행정계획이다.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과 영향권별·분야별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에 기한 각종 개발행정계획에 있어서의 환경보전계획 등이 그 예이나, 이러한 계획 중 마스터플랜으로 기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 ii) 두 번째 수단은 환경기준의 설정이다. 환경기준은 바람직한 환경조건의 유지라는 환경행정목표를 수량화한 것

13) 조홍식, “환경법 소묘”,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2호, 1999, 341~345쪽.

으로, 오염물질 총량의 증대현상을 막을 수 없었던 농도규제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타난 개념이다. 현재 환경기준은 단지 행정목표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고, 행정개별법이 허가를 할 때 환경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허가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민사법상 수인한도를 결정함에 있어 일응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규범적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을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기술을 채택하도록 하는 방법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가 우리나라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이 기준은 사업주체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위반시에는 각종 하명처분 즉, 개선명령·배출부과금 등의 규제조치가 뒤따른다. iii) 세 번째 수단은 직접적 규제 수단으로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신고제, 인·허가제 등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작위·부작위·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처분도 주요한 수단인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은 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하명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적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조업정지명령, 시설이전명령, 허가취소,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이 있다. iv) 네 번째 수단은 지역·지구의 지정이다. 그린벨트의 예와 같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설정된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상의 지역·지구가 실제로 환경보전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행정법 형식의 사단계는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공법적 의무를 「경제적 유인책」(regulation by economic instrument)에 의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명령통제방식은 개별기업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경제적 유인책은 시장기제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유인으로 피규제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내고 환경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법상 시행되고 있는 배출부과금제도(emission charge system)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상의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된 정부에 의한 보조금지원제도(governmental subsidy) 등이 이 유형에 속하고, 현재로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조세, 예컨대 환경세와 같은 목적세를 이용한 규제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규제개혁의 기치 아래 규제형식의 중점이 명

령통제방식에서 경제적 유인책으로 이행해 갈 것으로 보인다.

환경행정법 형식의 오단계는 통합오염관리방안에 의한 규제이다. 현행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은 매체가 분할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각 매체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배출구를 통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매체별 분할규제방식은 환경이 물, 공기, 토양, 그리고 생물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부연하면, 오염물질은 최초로 배출된 매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체를 전전순환하기 때문에, 매체별로 배출구를 아무리 단속하여도 이미 나온 오염물질은 다른 형태로 변하여 다른 매체를 오염시키고, 따라서 종합적인 환경질 개선효과면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통합오염관리방식은 어떤 산업공정의 작동이 있기 전에 그 공정에 따른 위해도를 지역의 환경용량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통합적 의사결정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허가를 발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오염관리방식은 환경용량 등 기초적 사실에 대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가능한 환경관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특 색

(1) 과학기술관련성

환경행정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기준달성을 목표로 한다.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개별 환경행정법은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폐기물처리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배출시설, 방지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굴뚝배출가스자동감시체제 또는 굴뚝원격자동감시체계는 과학적 상시감시를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량규제 실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과 같은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한 사전적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굴뚝별로 오염물질의 성분별 배출상태, 생산공정, 가동상태 등을 실시간대로 별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긴급사태의 예측 및 사고의 신속대처, 공정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등 많은 효과가 있어 그 설치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¹⁴⁾

이와 같은 것은 모두 과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그 산출물을 법령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법은 당연히 과학기술적인 요소들이 많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Beethoven의 死因이 납중독).

14)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591쪽.

한편, 환경기술에 대한 개발·보급은 환경규제와 반비례한다. 예컨대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기술이 고도화되면 그 처리구역 내의 시설입지규제가 그만큼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법은 환경기술 수준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¹⁵⁾ 그런데 새로운 과학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정부가 이 새로운 기술수준에 맞추어서 환경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에[예: 미국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집행 당시 구득가능한 최고의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을 채택하도록 규정]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지 않는다. 즉 기술을 개발해봐야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는 자승자박의 결과만을 낳게 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DDT규제와 관련한 R. Carson의 절규).

(2) 변형된 과징금제도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에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배출규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동법 제16조·제17조). 즉 환경부장관은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동법 제16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7조제1항).

한편, 동법은 조업정지명령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부장관은 일정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20조의2 제1항). 즉,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20조의2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하는 대신 조업정지명령을 면하게 함으로써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 다만,

15) 조현권, 환경법, 법률문화원, 2006, 143쪽.

조업정지를 명하는 것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 등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43조).

그러나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이나 개선명령의 준수를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수단에 의해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히 지불능력이 충분한 사업자의 경우나 위반행위에 대한 정규적인 단속·적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자칫 처음부터 금전적 수단으로 규제를 회피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¹⁶⁾

(3) 원인자부담원칙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란 누가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및 피해구제에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로서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물건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는「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조는「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원인자부담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은 비용부담의 한 가지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환경관계법에서도 환경오염의 원인이 불명하고 복잡·누적적·장기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인과관계의 규명과 각자의 책임귀속의 정도를 산정하기 관련한 문제가 있는데, 이때에는 공동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확대적용을 인정한다. 그러나 확대적용은 어디까지나 원인자책임의 원칙의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문제되어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주민에게 오염발생을 제한시키면 그들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 상·하류 지역간의 갈등이 야기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혜자부담도 적용하여 상·하류 지역간의 협력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

16)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598쪽.

이와 같이 오염자부담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확대적용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인자 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을 공동적용하거나, 시설물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원인자가 부담할 의무를 승계시키며, 환경오염자 뿐만 아니라 환경훼손자에 대한 비용부담으로까지 그 책임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지만, 우리 환경관계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대한 사각지대도 너무 많고, 비용부담의 정도도 그 강도가 약한 경우가 많다.¹⁷⁾ 그 결과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¹⁸⁾ 그래서 개정된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환경오염동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5호).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동법 제3조제4호). 따라서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을 야기하는 산업활동을 일정수준으로 또는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환경보전은 재산권의 행사나 영업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의 제한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상수원상류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함으로써 상수원의 물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의 환경권이 보장되고, 공장의 가동률을 낮추어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을 줄임으로써 공장인근 주민의 정온한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환경보전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의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환경보전은 다른 기본권의 제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 환경보전과 다른 기본권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법익형량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환경보전은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 환경보전과 다른 재산권의 행사 즉 개발권의 행사, 영업의 자유 등이 상충될 경우, 환경보전을 위하여 이러한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다.

17) 예컨대 오수를 방류수수질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처리비용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며, 유독물관리기준에 위반하여 유독물을 대량 불법보관·방치하여 수역원의 이익을 얻어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벌칙규정이 실효성이 없다.

18) 조현권, 환경법, 법률문화원, 2006, 159쪽.

예컨대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댐 건설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보전의 범위 여하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법은 경제성장·개발의 논리에 의해 항상 도전을 받는다.

이에 환경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강수계법 제8조에서 지역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오염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행하는 오염물질량과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물질량의 증가를 총량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⁹⁾

그 조화점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시대상황, 경제수준의 정도, 환경오염의 정도, 국가의 경제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법은 내용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므로 이와 관련되는 환경보전은 결코 양도될 수는 없는 것이다.

(5) 협동의 원칙

환경보전은 국가의 힘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으며 국가와 일반국민, 사업자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바, 이것이 환경법상의 협동의 원칙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협동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5조와 제6조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의 원칙이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협도를 유도하는 원칙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민의 환경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서의 참여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²⁰⁾

Ⅲ. 환경행정법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 환경행정법체계는 이른바 복수법주의로 오염종류별 또는 규제대상별로 여러 개의 독립된 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러한 비판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²¹⁾ 환경법의 비체계성과 비효율성이다.

19)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785쪽.

20) 조현권, 환경법, 법률문화원, 2006, 163쪽.

21) 조홍식·송상현·노상환,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26쪽.

1. 비체계성

환경법체계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나열적이며, 비체계적이고 비정형적이어서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①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대책법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② 개별법률 상호간에 중복하여 규제하는 경우도 있고 법의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개별 법률들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 ③ 지나치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기타 환경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 국민을 비롯한 규제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대책법의 모호한 관계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 원칙 또는 이념이 개별대책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이념은 아직은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우리나라 환경법의 실체적 내용 및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른바 정책적 선언을 담은 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U.C. Berkeley 법과대학의 John P. Dwyer 교수는 현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상징적 입법이 정책판단을 오도하고 규제가정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²²⁾ 와싱턴 대학 법과대학의 Richard J. Lazarus 교수는 상징적이고 선언적 규정과 달리 법령은 중복과 모순으로 가득차 있어 이를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앞으로 환경법 개혁의 과제임을 천명하고 있다.²³⁾

(2) 개별법령간의 상호중복이나 공백, 불균형

1) 개별법령간의 상호중복이나 법률의 공백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을 수개의 법에서 규율하는 경우에는 어느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이는 환경법을 이해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예컨대 배수에 관한 법 규정을 들 수 있는데,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수질환경보전법은 각 배출기준 및 배출시설허가요

22) John P. Dwyer, The Pathology of Symbolic Legislation, 17ECOLOGY L.Q. 233 (1990).

23) Richard J. Lazarus, Meeting the Demand of Integration in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Law: Reforming Environmental Criminal Law, 83 GEO. L.J. 2407 (1995).

건이 유사하고 기본개념 및 적용범위의 중복이 문제된다. 수질환경보전법상의 폐수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수질환경보전법상의「오수」그리고 하수도법상의「하수」는 그 각 법률이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 및 범위가 불분명하다. 즉 폐수, 오수, 하수는 하수법이 규정하면 하수가 되고, 오수법이 규정하면 오수가 되며, 수질환경보전법이 규정하면 폐수가 된다. 경우에 따라 오수는 하수와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되며 폐수를 포함한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중첩적인 개념체계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정비 및 배수관리에 방해되기도 하며,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오염물질배출공장의 부과금과 하수도법상의 하수도료는 오염물질의 정화·처리를 위한 부담금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된다.

매체특화적인 법체계하에서 법률의 공백의 예로서, 특히 미국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물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율문제이다. 즉 미국의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CAA)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규제하고 있지 않고, 반면에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 CWA)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규제하고 있으나 대기로의 배출은 규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관하여는 물로부터의 흡수로만 규율하고, 물에서 대기로의 배출에 따른 공기로부터의 흡수는 무방비상태인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수역부분과 해양의 혼재분야인 연안역 관리문제에 관해서도 같은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개별법률간의 불균형

개별 법률간의 불균형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법률상호간의 중복 못지않게 환경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현재 개별법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의 비슷한 정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갖는 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갖는 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개별법마다 차이가 있어 어떤 것은 과태료로 처벌되는가 하면 어떤 것은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사업 자체의 허용 여부를 통제하는 명령적 규제수단이 개별 법률마다 차이가 있어 같은 종류의 행위를 하려할 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신고나 등록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다.

셋째, 각종부담금의 납기규정방식이 개별법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슷한 정도의 비난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에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법이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어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결국 법의 집행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3) 지나친 하위법령 위임방식

무분별한 위임입법현상은 환경규제 현실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법률 보다는 하위명령인 행정입법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환경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국회가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개별 환경법상의 규제기준들, 예컨대 배출허용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의 수준에서 결정되며,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역시 대부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결정되고 있다.

환경입법에서 위임입법이 빈번히 나타나는 것은 과학기술입법 등의 다른 전문기술적 분야에서 볼 수 있듯이 사안의 전문기술성, 국회의 입법능력 및 시간의 부족, 사정변화에 따른 유연성 부여 등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사실상 이러한 현상은 늘 있어왔고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현상도 아니며, 현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입법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의회입법의 원칙을 형해화 함으로써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기초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정부에 의한 환경입법과정에서 관련부서나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행사되어 환경입법의 궁극적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이익이 무시되고, 논의의 초점이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환경법적 규율의 타당성 또는 합목적성 보다는 이해관계에 대한 타협과 조정에 집중될 위험이 있다.

2. 비효율성

환경법의 체계가 오염매체별로 짜여진 복수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환경보호 및 개선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① 법체계가 오염매체별로 이루어진 분할법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 ② 법체계가 지나치게 규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③ 과도하게 직접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1) 오염매체별 분할법체계

현행 분할적 환경법체계 즉, 개별법주의하의 입법은 매체별로 짜여져 있다. 이는 오염물질이 최초로 배출된 매체인 대기, 물 또는 토양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 즉, 오염물질이 매체를 이동하여 복합적,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개별대책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매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것이다. 오염매체별 분할 법체계가 불러오는 다양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²⁴⁾

첫째, 현행 분할적 법체계는 오염물질을 다른 환경분야로 이전시키는 오염관리방식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예컨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율대상이 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물을 통해 배출될 때 대기환경보전법은 규율하지 않는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물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둘째, 현행 분할적 환경법체계는 종종 현재의 어떤 환경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당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환경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오염물질의 전매체에 걸친 이동경로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오염물질의 생애주기를 전부 평가하여 규율하는 것이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현불가능 할 경우, 차선택으로 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기 힘든 오염물질의 생산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현행 분할적 법체계는 예방이 최선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분할적 법체계는 피규제자 즉, 주로 사업체가 원재료의 선택, 제품의 설계, 공정의 선택, 배출의 공정정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다. 즉 환경친화적인 원재료 및 공정의 선택 등을 유도하지 못한다.

넷째, 현행 분할적 법체계는 새로운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환경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고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고 변형하는 가를 아는 것이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오존층 파괴나 산성비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모자랐던 이유는 그 문제들이 기존의 분화된 법체계나 조직체계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현행 분할적 법체계는 대처하여야 할 환경문제들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각 매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은 각자 자기들이 맡은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전문적인 과학지식이 아니라 대중의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염물질의 생애주기를 바라볼 수 있는 체계 하에서만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현행 분할적 법체계는 환경정책과 다른 정책과의 보다 효과적인 통합을 방해한다. 대중적 처리에서 벗어나 문제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다시 환경전체를 바

24) 조홍식·송상현·노상환,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44쪽.

라분다는 것은 제조, 에너지, 농업, 운송, 주택, 소비자문제 등 다른 정책분야와 보다 더 통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현행 분할적 법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조직을 유발한다. 즉 법간 집행에 관한 규정의 불일치, 정보체계를 조화하는데 따르는 어려움, 엄격한 예산범주, 복수 허가방식 등의 행정조직상의 문제가 환경행정조직에 있다. 그 결과 효과적인 조치의 결여, 자원 및 인력의 낭비가 자주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2) 규제자 중심의 법체계

규제자 중심의 규제편의를 위한 법제정은,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매우 비효율적 체계이며 법집행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배출시설설치 규제의 경우 하나의 시설물을 가동하려면 현재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 여러 분야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허가를 일괄처리 할 수 있는 “하나의 신청서, 하나의 허가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의 환경당국에 Multimedia Permitting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논의도 있다.²⁵⁾

(3) 직접 규제위주의 법체계

과도한 직접규제위주의 법체계는 규제에 따르는 비효율과 손실이 많으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의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에 간접규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은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 유인책으로 배출부과금제도가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한 경제유인적 규제방식이 아니라 명령적 규제방식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명령적 규제와 경제유인적 규제를 결합시킨 일종의 변형적 규제유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경제적 유인책은 같은 환경개선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도 그 준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바 규제대상기업들이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의 도입과 활성화가 요망된다하겠다.

IV. 환경행정법의 처분기준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서 설

환경행정법은 비교적 늦게 제정된 편이어서인지 환경관련법률-시행령-시행규칙사의 관계가 다른 법에 비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것 같다. 이하에서는 환경행정법의

25) 조홍식·송상현·노상환,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48쪽.

처분기준과 관련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수질환경법령, 대기환경법령, 폐기물관련법령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환경보전관련법령의 처분기준과 관련한 문제점

(1) 대기환경보전법관련

1) 행정처분기준

[별표 33] <개정 2006.12.29>
행정처분기준(제122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마"의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 가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가목 중 (4), (8)에서 매연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3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21조							
(가)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사용중지 명령						
(나)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명령						
(2) 법 제10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5일	10일					

(3)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 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법 제20조	조업정지 또는 폐쇄	허가취소				
(3의2)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 는 경우	법 제11조 제3항	조업정지 또는 폐쇄	허가취소				
(3의3) 법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가동개시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	법 제14조	경고 또는 폐쇄	허가취소				
(4) 법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를 하고 가동 중인 배 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 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의 결함·고장 또는 운 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배출허용기준을 초 과한 경우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가) 「환경정책기본 법」 제 22조의 규 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 외에 있는 사 업장의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나) 「환경정책기본 법」 제22조의 규정 에 의한 특별대책지 역 안에 있는 사업 장의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0조						
(가)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 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 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에 공기를 섞어 배 출하는 행위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나) 방지시설을 거 치지 아니하고 오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제 2 주제 환경행정법의 특성과 행정처분기준

물질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치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폐쇄		
(다)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또는 폐쇄	허가취소
(라)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마) 기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5)에 해당하여 사람 또는 가축에 피해발생 등 중대한 대기오염을 일으킨 경우	법 제20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조업정지 또는 폐쇄	허가취소		
(7)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경고	경고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8)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7조 법 제20조	개선명령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또는 폐쇄	허가취소	
(9)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경고	허가취소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폐쇄				
(10)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제20조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나) 자가측정을 허위로 기록하였거나 기록부 및 자가측정시의 여과지 등을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1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제20조 법 제24조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변경명령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다)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12) 법 제26조제4항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법 제26조 제4항 법 제27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비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기간은 당해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9)의 (나)의 경우 1차 경고를 한 때에는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명령을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의 (가)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일까지, (3)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완료일까지, (4), (8) 및 (9)의 (가)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4. (4)의 (가)의 위반행위를 5차 이상 한 자에 대하여는 이전 위반시의 처분에 더하여 추가위반행위를 한 때마다 조업정지 10일을 가산한다.

제 2 주제 환경행정법의 특성과 행정처분기준

5.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질소산화물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은 (4)(가) 및 (나)의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6. 삭제 <2006.12.29>

나.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조						
(가) 적산전력계 미부착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나) 사업장안의 일부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경고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다) 사업장안의 모든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라) 영 별표 2 제2호라 목의 규정에 의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마) 영 별표 2 제2호바 목의 규정에 의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배출시설로서 6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폐쇄			
(2) 제15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가동시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측정항목별 상태표시(보수중, 동작불량 등) 또는 전송장비별 상태표시(전원단절, 비정상)가 1일 2회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1주동안 연속하여 4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법 제20조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조업정지		
(3) 법 제15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법 제20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를 정당한 사유없이 7 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4) 법 제15조의2제3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측 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 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 는 경우	법 제20조						
(가) 측정기기 등의 측 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 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나) 측정기기 또는 전 송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하 는 경우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다) 교정가스 또는 교 정액의 표준값을 허위 로 입력하거나 부적절 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 액을 사용하는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5) 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 는 경우	법 제15조 의2제5항· 제6항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나) <삭제>							
(다) 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제센터 에 측정자료를 전송하 지 아니한 경우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6) 법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 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허가취소					

2) 평 가

나.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2) 제15조의 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가동시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측정항목별 상태표시(보수 중, 동작불량 등) 또는 전송장비별 상태표시(전원단절, 비정상)가 1일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1주 동안 연속하여 4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1차 경고, 2차 조

업정지 5일,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30일 등으로 가중되는데, 3차 조업정지 10일은 (3)의 법 제15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위반과 비교하여, 위법성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3차위반시의 행정처분이 조업정지 10일로 상대적으로 경미함으로 이를 가중하여 조업정지 20일, 4차위반시의 조업정지 30일을 허가취소 또는 폐쇄로 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3) 대기환경보전법상 문제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포괄위임과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기본권의 침해로 요약된다.

i) 포괄위임과 관련하여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8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배출부과금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부과금 부과에 탄력성을 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부과금산정의 기초가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달라진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고려하여 부과금산정을 사후에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를 둔 제도이다. 그런데 모법에 부과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시행령에서 배출부과금의 조정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²⁶⁾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나,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에 의한 절차적 통제를 제외하고는, 환경부장관에게 전부 일임되어 있다는 점이²⁷⁾ 문제로 지적된다.

ii)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정에 있어 위의 정부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 외에 이해관계인의 참여 및 의견수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3) 수질환경보전법령관련

배출부과금제도의 목적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자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경제적인 유인을 하고 환경관련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을 함으로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수질환경을 개선함에 있다.

그러나 배출부과금제도의 오랜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질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배출부과금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부과금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596쪽.

27)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582쪽.

첫째, 포괄위임과 관련하여서는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이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한 절차적 통제를 제외하고는 환경부장관에게 전부 일임되어 있다는 점이다.²⁸⁾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정에 그 같은 정부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 이외에 이해관계인의 참여 및 의견수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수질환경보전법은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에 있어 농도규제방식에 의하고 있는 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탈법행위의 가능성, 즉 농도규제방식에 의할 경우 폐수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희석하여 배출하면 농도가 낮아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될지라도 오염물질의 총량은 변함없이 배출될 수 있다. 그 결과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이내의 배출이므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셋째, 폐수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99%나 101%나 별 차이 없으며 공공수역에 오염을 미치는 영향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비슷한 오염결과가 야기되었는데 99% 배출은 합법화되어 부가금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101%배출은 부가금이 부과된다면 불합리하다.

넷째, 개별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고 할지라도 배출업체의 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배출시설이 증가할 경우 오염부하량은 증가하는 것이다. 부연하면 배출허용기준이 농도기준이라는 점에서 환경오염의 집적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이 잘 준수되더라도 환경악화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배출허용기준 내 배출이므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농도규제방식의 문제점을 보충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이내 배출에 대해서도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도규제방식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강화일뿐 총량규제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부과는 아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종래 배출시설설치·변경의 환경부장관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1995. 12. 29. 개정하였는바, 특히 허가제와 신고제의 대상범위를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맡김으로써 배출시설허가제의 적용범위에 관한 한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게 위양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되었다. 이후 개정된 시행령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극히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신고제를 원칙으로 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왔다.²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는 동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가

28)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657쪽.

29)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661쪽.

그 명령을 이행한 때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명령의 이행을 보고하고 이행사항을 확인하도록 동법률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다. 또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등을 명령한 정부 스스로 그 명령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행정편의적으로 이행사항을 사업자에게 의무보고토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단연히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개선방안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한도의 규제에 대한 농도규제방식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보완하기 위해 개정법(1995. 12. 29.)에서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에 한하여 1997. 1. 1.부터 제1, 2종 사업장 등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기본부과금 제도는 총량규제제도로 전환한 것은 아니지만, 총량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염이 심한 공단이나 대도시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는 오염억제를 위하여 총량제에 바탕을 둔 배출부과금제도가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총량규제는 우선 i) 환경용량산정과 같이 기술적으로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고, ii)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고, iii) 배출물질의 종류와 한계를 정하여 특정 기업 또는 기업에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지역이나 기업도 배출할당량을 적게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나 오존층파괴물질을 규제하려는 선진국의 노력에 개발도상국가가 반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iv) 이미 오염원이 밀집하여 환경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하고 있는 경우 총량규제를 실시하여 보상없이 일부 오염원에 대해 폐쇄조치를 시킨다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장에 위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부득이 농도규제방식에 의하고 있으나, 농도규제방식은 하천·호소의 구체적 수량, 오염의 정도 등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지역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아니한 배출허용기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가 있다.

입법론상으로는 배출부과금제도의 단기적 보완방안으로 배출부과금 부과요소 중 지역별부과계수를 더욱 차등화 시켜 적용시키거나, 차별화농도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오염물질농도에 관한 협의기준³⁰⁾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³¹⁾

현실적 대안으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농도규제방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신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거나 부분적으로 시설의 가동을 제한하는 등 오염원의 입지제한 조치와 부분적 총량제를 도입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을 병행하여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만시지탄격이지만 4대강법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서 총량규제를 도입한 것은 다행이다.

(5) 환경개선부담금

1) 개념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³²⁾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³³⁾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환경세다.

환경오염의 약 40%를 차지하는 유통·소비부분의 건물 기타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오염절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이는 환경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오염자책임의 원칙이 구현된 것이다.

[별표 3] <개정 1993.12.31>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제8조제1항 관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30) 협의기준은 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치로서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법정기준(예컨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기준 등)보다 엄격하게 제시된 것을 말한다.

31) 조현권, 환경법, 법률문화원, 2006, 604쪽.

32)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다.

33)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2) 부과대상지역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시설물의 경우 농림지역만이 부과대상 제외지역이다. 자동차에 대한 부과대상지역은 전국이다.

3) 부과대상자

㉠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³⁴⁾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지분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오염원인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건물임대차의 경우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한 건물임차인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물소유자³⁵⁾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매매로 인하여 시설물이 양도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현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부과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이 정확히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자동차

부과대상자동차는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그러나 부과기간 중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4) 문제점과 개선책

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원인자부담금이라 칭하며 실제로는 건축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건축물의 용익권자가 부담금을 미납시 건물주의 책임으로 되어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에게 부과

34)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기간 전체(6개월)에 대해 부과한다. 따라서 부과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부과기간 전체에 대해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과방식은 부진정 소급적으로 소급부과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다만, 부과기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에게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35) 소유자에는 형식상의 소유자 즉 명의수탁자·양도담보권자도 포함한다. 감사원은 신탁법상의 수탁자도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부담을 가함으로써 환경침해를 줄일 수 있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추구할 수 있다.

3. 폐기물관리법령

(1) 발생억제·재활용의무의 실효성

현행『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1조 제1항과 제2항은 폐기물발생억제와 재활용의무에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과태료의 제재는 형벌도 아니고 커다란 재정적 부담도 주고 있지 못해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법의 특성 중 하나로 흔히 집행결함을 들곤 한다. 이는 환경문제 자체가 근원적이고 추상적이며 환경보호에 관한 규범이 선언적이고 프로그램적 성격이 짙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적 유인책을 써서 자발적으로 수범자가 환경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정책을 선호하기도 한다. 한국의 재활용법상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보면, 폐기물배출자의 유인을 이끌어 내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1조 관련 별표2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별표 2] <개정 2007.3.27>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관련)

품목 구분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1. 살충제, 유독물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mL 이하	개당 24.9원
	(2) 500mL 초과	개당 30.7원
	나. 유리병	
	(1) 500mL 이하	개당 56.2원
	(2) 500mL 초과	개당 84.3원
다. 금속캔	(1) 500mL 이하	개당 53.9원
	(2) 500mL 초과	개당 78.2원
2. 부동액	부동액	ℓ 당 189.8원
3. 껌	껌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4. 1회용기저귀	1회용기저귀	개당 5.5원
5. 담배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	20개비당 7원

	233조의9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제품	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

※ 비교 :

1.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동종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3호에 따른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하며, 수입가는 수입항도착가격(C.I.F)으로 한다.
3. 제6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투입량은 당해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투입량으로 한다.

위 별표 2에 의하면 1회용기저귀의 경우 개당 5.5원 하고 있다. 이러한 금액으로는 회수자가 스스로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수 의지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고, 만일 이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무단폐기할 경우 또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폐기물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현행 과태료의 액수를 대폭인상하고, 아울러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또한 형사적 제재를 통해 자발적인 발생억제나 재활용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실의 폐기물관리실태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발생억제나, 재활용의무의 해태는 폐기물의 무단투기·불법처리 등에 버금가는 환경규범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⁶⁾

(2)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문제점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의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돌려주는 제도이다.³⁷⁾ 예컨대 유리병에 담긴 소주나 맥주나 콜라를 살 때 소비자들이 미리 돈(보증금)을 냈다가, 나중에 빈 유리병을

36) 정훈,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한국의 폐기물관리법과 독일의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 (KrW-/AbfG)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65쪽.

37)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6, 546쪽.

동네가게에 갖다 주면 이 돈을 되돌려 받는 제도를 말한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3개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던 빈병의 재사용·재활용 제도를 2003년 1월부터 환경부로 통합·운영하고 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2005년 5월 현재 총 17개 업체(주류 12, 청량음료 5)의 75개 제품이 그 대상이다.³⁸⁾

이 제도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1985년에 소주와 맥주병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1988년에 청량음료병, 1991년에 청주병·과실주병으로 대상 품목이 점차 확대되었고, 2000~2003년 평균 회수·재활용율이 약 97%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재활용 시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회수되지 못하는 빈용기 수량만큼 보증금이 미반환되어 2000~2003년 동안 연 평균 68억원, 총 270억원의 미반환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⁹⁾

< 2000~2003년 빈용기 회수율 및 미반환 보증금 현황 >

구 분	계	2000	2001	2002	2003
회수·재활용율(%)	96.8	98.6	95	96.2	97.5
미반환율(%)	3.2	1.4	5	3.8	2.5
미반환금(억원)	270	18	136	91	26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미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관계부처, 업계, 민간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미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을 공병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설치 및 홍보 등 공익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5.12.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가 신설되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주류(가. 『주세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효주류, 나. 『주세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류주류)와 청량음료를 말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38) 통합전 『공병보증금제도』는 빈병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량음료(콜라, 사이다, 주스 등)는 보건복지부('85)에서 주류(소주, 맥주 등)는 국세청('88)에서, 기타 빈용기는 환경부에서 분산 운영되었다.

39)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보도자료. 2005.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들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22조의2(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본조신설 2005.12.29] 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빈 용기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2. 빈 용기의 보관 및 수집소의 설치·지원
3. 빈 용기의 효율적 회수 및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4. 전년도의 받은 빈용기보증금액 보다 빈용기보증금의 지급 금액이 많은 경우의 그에 대한 보전
5.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 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게 빈용기의 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 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 제4항).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은 아래의 별표 5와 같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 빈용기보증금액).

[별표 5]

빈용기보증금액(제19조관련)

품 목	규 격	빈용기보증금액
주 류	190ml 미만	20원/개당
청량음료류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당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당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당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취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량별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의3(취급수수료의 지급)⁴⁰⁾ 제1항].

1. 용량 190mL 미만 제품 : 개당 5원
2. 용량 190mL 이상 400mL 미만 제품 : 개당 13원
3. 용량 400mL 이상 1,000mL 미만 제품 : 개당 16원
4. 용량 1000mL 이상 제품 : 개당 20원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취급수수료를 도매업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에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의3(취급수수료의 지급) 제2항].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의 준수사항).

[별표 6] <개정 2006.6.29>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시행규칙 제20조관련)

1.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 가. 지역별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수집소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것
 - 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도매업자, 소매업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 다. 빈용기의 회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빈용기를 취급하는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것
 - 라. 완전히 파손되지 아니하고 일부 파손된 빈용기도 회수하고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 마.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불편·부당사항 신고처를 용기의 상표에 기재할 것. 다만, 출시부터 용기에 별도의 상표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소비자가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등에 대한 불편·부당사항을 신고할 경우 이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당해 소비자에게 알릴 것
 - 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연 2회 이상 중앙일간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광고할 것

40) 본조는 2006. 6. 29. 신설되었다.

- 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반환보증금을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따라 당해 연도에 사용할 것
- 2.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도매업자의 준수사항
 - 가. 거래하고 있는 소매업자가 보관 중인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비용을 회수하고 그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
 - 나. 거래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를 일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액 소매업자에게 지급할 것
 - 다. 완전히 파손되지 아니하고 일부 파손된 비용기도 회수하고 비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 3.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 가. 판매 중인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비용을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와 관계없이 비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 나.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가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용기의 반환장소를 설치하고,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

그런데 허술한 회수시스템으로 비용기보증금, 특히 공병보증금이 술이나 음료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의 ‘일부’가 엉뚱하게 술·청량음료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게 돌아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일부’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이다.

공병보증금 징수 규모는 만만치 않다. 청량음료의 경우 주로 일회용 플라스틱 페트병을 많이 사용하지만, 맥주와 소주의 경우 태반이 유리병을 사용한다. 매년 국내에서 판매되는 맥주병 수는 2001년의 경우 약 34억병(5백ml 기준, 추정치), 소주병은 약 29억병(3백60ml 기준, 추정치)이다.

맥주병에 붙는 공병보증금은 50원(5백ml 기준)이고 소주는 40원(3백60ml 기준)이다. 이를 계산하면 소비자들이 매년 술 제조업체들에게 미리 내는 보증금은 대략 연 2천8백억원선이다.

공병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병회수율이 매년 반드시 1백%씩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미처 반납되지 못한 보증금은 소주나 맥주 제조업체들에게 ‘짹짹한 잡수익’으로 잡힌다. 이처럼 잡수익으로 잡히는 근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중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비자들이 공병보증금을 온전하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도 도입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보증금이 엉뚱하게 빈병 유통을 담당하는 술이나 음료 유통업체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⁴¹⁾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용

41) 이코노미스트, 2002.5.16.

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제41조 제1항 제6호),⁴²⁾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제41조 제1항 제6호의2),⁴³⁾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제41조 제1항 제6호의3)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행된 지 2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⁴⁴⁾ 비용기보증금의 소비자 반환 및 취급수수료 적정 기금운영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지자체·환경자원공사 등이 공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할인점, 백화점, 중·소매업점(중형마트, 편의점, 소형슈퍼)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호응, 소비자의 권리의식 및 환경보호의지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비용기보증금제도가 그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으며

이상에서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환경행정법의 특색과 환경행정법과 관련한 환경보전관련법령의 처분기준에 관하여 두서없이 살펴보았다.

환경행정법이 지나치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여 일반국민은 물론 사업자와 법의 집행자마저도 복잡하고 혼란을 가져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개별 환경법상의 규제기준들, 예컨대 배출허용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역시 대부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것은 환경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국회가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행정법과 관련한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현상도 아니며, 현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위임입법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의회입법의 원칙을 형해화

42) 그 동안 비용기 반환시 취급수수료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비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못한 문제점을 이 규정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취급수수료란 제조업자가 비용기 회수시 도·소매업자에게 지급(병당 5원~20원)하는 회수 비용으로 도매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일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의 50%이상을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43) 빈병 회수과정에 취급수수료가 도매점에서 소매점으로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

44) 이를 반영하듯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기보증금 관련 홍보 안내문을 2006년 2월 2일 배부하였다.

1. 주류 및 청량음료에 적용되고 있는 비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에 대한 적정 반환 및 지급에 대하여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관심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보증금중 일부가 미지급되는 사례가 있는 등 아직까지 비용기보증금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시·도(시·군·구)에서는 비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적정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지역내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여 주시고 별송으로 보내는 리플렛을 배부하여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작된 리플렛은 각 시·군·구로 택배 배송예정임).

붙임 : 리플렛 문안 및 각 지자체별 배부 내역 1부. 끝.

하고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기초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한 환경입법 과정에서 관련부서나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행사되어 환경입법의 궁극적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이익이 무시되고, 또한 법체계가 오염매체별로 이루어진 분할법체계를 취하고 있어서 개별법률 상호간에 균형이 맞지 않고, 법체계가 지나치게 규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도하게 직접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환경보호 및 개선에 있어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환경행정처분을 내릴 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함으로써 복잡·다기하고 과학기술적 관련이 많은 환경행정처분의 바람직한 기준의 설정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